

第268回國會  
(臨時會)

# 建設交通委員會會議錄

第 3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7年6月21日(木)

場 所 建設交通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현안질의
2.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3.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4.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5.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
16.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
17. 고속철도 역세권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39.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
4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4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
49. 중앙선·경춘선 소음방지를 위한 망우역 일대 터널화에 관한 청원
50.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군 강상면 구간 노선(안) 개선에 관한 청원
51.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
5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
54. 주택법 개정에 관한 청원
5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56. 개인택시 차고지 확보 폐지에 관한 청원
5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 조속 처리에 관한 청원
58.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사업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
59. 경매완료된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구제에 관한 청원
60. 오미재터널 공사 착공 요망에 관한 청원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관한 청원
62. 신안산선 대림삼거리 역사 유치에 관한 청원
63. 비주거 건물의 위반시설 자진철거 대책마련과 일부 양성화 요구에 관한 청원
64.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의 시행령 폐지 검토에 관한 청원

**審査된案件**

1. 현안질의 .....	6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22
2.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5
3.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엄호성·정희수·김석준·안명옥·진수희·차명진·서병수·안홍준·정병국·이계진·배일도 의원 발의) .....	25
4.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유필우 의원 대표발의)(유필우·장복심·신학용·한광원·원혜영·김정권·김교홍·정장선·박상돈·강길부·변재일·신국환·문석호·주승용·양형일 의원 발의) .....	25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윤호중·우원식·신중식·우윤근·장항숙·주승용·이은영·장복심·조경태·김동철·정장선·박상돈·장경수 의원 발의) .....	25

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 · 구논회 · 이영호 · 정성호 · 황우여 · 노현송 · 김태년 · 엄호성 · 이계안 · 민병두 · 강혜숙 · 우제창 · 정두언 · 정동채 · 박상돈 · 홍미영 · 윤원호 · 김재홍 · 이광철 · 이경숙 · 박명광 · 이상호 · 김재윤 · 우윤근 · 장향숙 · 문석호 · 김영주 · 양형일 · 신기남 · 최재성 · 안영근 · 유승희 · 오제세 · 김형주 · 강성중 · 이원영 · 심재덕 · 정의용 · 배기선 · 유재건 · 김희선 · 김종률 · 김현미 · 최병국 · 박기춘 · 신학용 · 강기정 · 송영길 · 이근식 · 장경수 · 정장선 · 이강래 · 주승용 의원 발의) ..... 25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오을 의원 대표발의)(권오을 · 신상진 · 이성구 · 김정권 · 김우남 · 황우여 · 이계경 · 이해봉 · 정의화 · 정성호 · 김학원 · 박상돈 · 엄호성 · 이인기 · 김명주 · 안상수 의원 발의) ..... 25
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 · 김명주 · 이성구 · 황우여 · 이경재 · 신상진 · 이인기 · 김태년 · 김학원 · 김종률 · 박상돈 · 안영근 · 최경환 · 엄호성 · 박재완 · 서재관 · 박찬숙 · 이계진 · 안병엽 · 이해봉 · 심재덕 · 고조홍 · 임해규 의원 발의) ..... 25
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 · 고조홍 · 김송자 · 김효석 · 박재완 · 서재관 · 신중식 · 이상열 · 이인기 · 이인영 · 전병헌 · 정성호 · 정진석 · 채일병 · 최인기 의원 발의) ..... 25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 · 이성권 · 박형준 · 신상진 · 권철현 · 이명규 · 김정훈 · 유승민 · 최경환 · 송영선 의원 발의) ..... 25
1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강길부 · 고조홍 · 김성곤 · 김우남 · 박상돈 · 박찬숙 · 서재관 · 신중식 · 신학용 · 이인기 · 이종걸 · 이해봉 · 장복심 · 정성호 · 채일병 · 최성 · 황우여 의원 발의) ..... 25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 · 최인기 · 엄호성 · 신상진 · 최성 · 이해봉 · 김태년 · 노현송 · 이영호 · 고조홍 · 유재건 · 안상수 · 심재덕 · 이석현 · 변재일 의원 발의) ..... 25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 · 정문헌 · 이성권 · 배일도 · 이명규 · 이윤성 · 엄호성 · 안상수 · 이계경 · 최철국 의원 발의) ..... 25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 강길부 · 우제항 · 변재일 · 양승조 · 신학용 · 이종걸 · 최규식 · 김태년 · 서재관 · 장복심 · 주승용 · 엄동연 의원 발의) ..... 26
15.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6
16.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윤두환 · 이진구 · 허천 · 고홍길 · 김영덕 · 차명진 · 조일현 · 김태환 · 정희수 · 진영 · 교회선 · 김석준 · 김재경 · 유정복 · 최구식 · 박승환 · 이인기 의원 발의) ..... 26
17. 고속철도 역세권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주성영 · 박세환 · 이진구 · 이해봉 · 임인배 · 김태환 ·곽성문 · 김광원 · 정종복 · 유승민 의원 발의) ..... 26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 강혜숙 · 구논회 · 김동철 · 김종률 · 심재덕 · 양승조 · 오제세 · 이시중 · 이해봉 · 정문헌 · 정성호 · 정장선 · 주승용 의원 발의) ..... 26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허태열 · 박세환 · 이인기 · 이성권 · 김명주 · 박형준 · 서상기 · 김학송 · 김영선 · 박재완 · 김태환 · 이명규 · 이계경 · 김정훈 · 김양수 · 심재엽 · 박승환 · 안홍준 · 이해봉 의원 발의) ..... 26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6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창 의원 대표발의)(이재창 · 고조홍 · 김정권 · 김재원 · 김재윤 · 박상돈 · 신국환 · 신상진 · 안경률 · 안상수 · 안택수 · 이계경 · 이성권 · 이인기 · 정갑윤 · 정문헌 · 정성호 · 정의화 의원 발의) ..... 26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김양수 · 정갑윤 · 이계경 · 정화원 · 신상진 · 최구식 · 안홍준 · 유기준 · 김기현 · 김명주 의원 발의) ..... 26
23.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안 의원 대표발의)(이계안 · 강길

부 · 김명자 · 김선미 · 김희선 · 박상돈 · 백원우 · 우제창 · 이기우 · 이목희 · 이미경 · 이은영 · 홍미영 의원 발의)	26
24.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서재관 · 양형일 · 우제창 · 변재일 · 이종걸 · 이근식 · 장복심 · 조일현 · 박상돈 · 노현송 · 이영순 · 유선호 · 최규식 · 주승용 의원 발의)	26
2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 · 이인기 · 이해봉 · 정화원 · 이강두 · 신상진 · 강기갑 · 김명주 · 안영근 · 엄호성 · 김영덕 · 정문헌 · 안병엽 · 유승민 · 이방호 · 김우남 · 김광원 · 조일현 · 김낙성 · 김태년 · 신중식 · 이상배 의원 발의)	26
26.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 · 주승용 · 노영민 · 우원식 · 김낙순 · 선병렬 · 우제항 · 조일현 · 장항숙 · 신중식 · 유선호 · 한광원 · 한화갑 의원 발의)	26
27.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김애실 · 이계경 · 박상돈 · 이인기 · 박찬숙 · 박재완 · 이해봉 · 이한구 · 박형준 · 정희수 의원 발의)	26
28.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 · 김재원 · 이성구 · 신상진 · 박재완 · 이계경 · 이해봉 · 이재창 · 공성진 · 김선미 의원 발의)	26
29.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강길부 · 배일도 · 이인기 · 김석준 · 박재완 · 이한구 · 김태환 · 김성조 · 정갑윤 · 임태희 · 유승민 · 고조홍 · 김애실 의원 발의)	26
30.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 · 강기정 · 윤호중 · 김선미 · 송영길 · 유승희 · 김태홍 · 양승조 · 안명옥 · 이원영 · 김영주 · 신중식 · 구논희 · 이광철 의원 발의)	26
3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 · 고조홍 · 김기현 · 김명주 · 김학원 · 신상진 · 엄호성 · 이인기 · 이해봉 · 정문헌 · 정화원 · 차명진 · 최경환 · 최성 의원 발의)	26
3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 · 김교홍 · 김영주 · 김영춘 · 김재윤 · 김태년 · 민병두 · 오제세 · 이상호 · 우원식 · 유승희 · 이경숙 · 이미경 · 임종석 · 한병도 · 홍미영 의원 발의)	26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선병렬 · 권선택 · 유재건 · 장복심 · 장영달 · 구논희 · 정성호 · 서갑원 · 우제창 · 우윤근 · 이영호 · 양승조 · 송영길 · 이은영 의원 발의)	27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 의원 대표발의)(문학진 · 김동철 · 김재홍 · 김태년 · 김형주 · 노현송 · 배기선 · 배일도 · 백원우 · 서병수 · 서재관 · 유재건 · 이해봉 · 장항숙 · 정성호 · 정장선 의원 발의)	27
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 · 우원식 · 노영민 · 김형주 · 장항숙 · 홍미영 · 박상돈 · 서갑원 · 노현송 · 김태년 · 정성호 · 최규성 의원 발의)	27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천정배 · 양승조 · 김재윤 · 김교홍 · 정봉주 · 강기정 · 윤호중 · 이미경 · 이상경 · 서혜석 의원 발의)	27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허태열 · 김무성 · 김정권 · 이성구 · 엄호성 · 신상진 · 박종근 · 이계경 · 임해규 · 박형준 의원 발의)	27
38.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임종인 · 우제창 · 양형일 · 김재윤 · 박기춘 · 문병호 · 최규식 · 현애자 · 조성래 · 김태홍 의원 발의)	27
39.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7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 · 김교홍 · 문학진 · 박상돈 · 서재관 · 유필우 · 정성호 · 주승용 · 한병도 · 홍재형 의원 발의)	27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허태열 · 김종률 · 김무성 · 이해봉 · 박상돈 · 신상진 · 이인기 · 황우여 · 김정훈 · 이성권 · 안경률 · 고조흥 · 서병수 · 엄호성 · 정형근 · 안상수 · 김희정 · 박재완 의원 발의) ..... 27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 · 신상진 · 우제창 · 이경제 · 주성영 · 김성곤 · 이원복 · 김태년 · 이인기 · 오제세 · 이계경 · 김정권 · 고조흥 의원 발의) ..... 27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 · 김교홍 · 김영주 · 김영춘 · 김재윤 · 김태년 · 민병두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유승희 · 이경숙 · 이미경 · 한병도 · 홍미영 의원 발의) ..... 27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경제 의원 대표발의)(이경제 · 박세환 · 신상진 · 유정복 · 김형주 · 신명 · 황우여 · 박종근 · 신중식 · 김기현 의원 발의) ..... 27
45.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홍준표 · 단병호 · 한광원 · 김영덕 · 권영길 · 이해봉 · 이해훈 · 김정훈 · 김영선 · 김종률 · 박승환 · 서상기 · 안홍준 · 정갑윤 · 이명규 · 신상진 · 박재완 · 임해규 · 송영선 · 이재오 · 배일도 · 이성권 · 김용갑 · 이방호 · 조성래 · 정진섭 · 권오을 · 이인기 · 이인제 · 김학송 · 박세환 · 조정태 · 이상득 · 문희 · 원혜영 · 정희수 · 김양수 · 박종근 · 한선교 · 안상수 · 황진하 · 나경원 · 고경화 · 문학진 · 안영근 · 김태환 · 차명진 · 엄호성 · 이화영 · 이경제 의원 발의) ..... 27
4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 고조흥 · 김광원 · 김명주 · 김용갑 · 김우남 · 김재경 · 김충환 · 신상진 · 안상수 · 안영근 · 엄호성 · 윤두환 · 이상배 · 이인기 · 이주영 · 이진구 · 임인배 · 정의화 · 정희수 · 차명진 · 황진하 · 허천 · 허태열 의원 발의) ..... 27
4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최인기 · 김정권 · 문학진 · 최규성 · 유승민 · 최병국 · 김재윤 · 채일병 · 정의화 · 이낙연 · 주성영 · 김종률 · 김효석 · 이계경 · 박상돈 · 오제세 · 유선호 · 고조흥 · 손봉숙 · 채수찬 · 임인배 · 김형오 의원 발의) ..... 27
48.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 · 강기정 · 강길부 · 강창일 · 김근태 · 김동철 · 김부겸 · 김선미 · 김성곤 · 김성조 · 김송자 · 김원기 · 김춘진 · 김태홍 · 김효석 · 문학진 · 민병두 · 배기선 · 서갑원 · 선병렬 · 송영길 · 신국환 · 신중식 · 안영근 · 양형일 · 염동연 · 우윤근 · 원혜영 · 유기홍 · 유선호 · 유인태 · 이낙연 · 이목희 · 이미경 · 이상민 · 이상열 · 이시중 · 이인기 · 이인영 · 이해찬 · 임종석 · 정동채 · 정두언 · 정봉주 · 정의화 · 조배숙 · 채일병 · 최규성 · 최인기 · 최재성 · 한명숙 · 한병도 의원 발의) ..... 27
49. 중앙선 · 경춘선 소음방지를 위한 망우역 일대 터널화에 관한 청원(임인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8
50.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군 강상면 구간 노선(안) 개선에 관한 청원(정병국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8
51.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김원웅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8
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김영춘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 28
5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김덕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8
54. 주택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영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8
5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김춘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8
56. 개인택시 차고지 확보 폐지에 관한 청원(최재천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8
5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 조속 처리에 관한 청원(이주영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 28
58.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사업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영순 의원 외 16인의 소개로 제출) 28
59. 경매완료된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구제에 관한 청원(유선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8

60. 오미재터널 공사 착공 요망에 관한 청원(박세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8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관한 청원(유재건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8  
 62. 신안산선 대림삼거리 역사 유치에 관한 청원(전병헌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8  
 63. 비주거 건물의 위반시설 자진철거 대책마련과 일부 양성화 요구에 관한 청원(이낙연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8  
 64.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의 시행령 폐지 검토에 관한 청원(정화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8

(10시47분 개의)

○**위원장 조일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의사일정을 새롭게 하나 합의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국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1. 현안질의**

(10시48분)

○**위원장 조일현** 오늘 먼저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한 결과에 의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은 법안과 청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기로 의사일정이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회의에서 우리는 소위 한 당의 대선 예비후보가 주장한 운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건교위가, 건설교통부와 또 산하단체가 그것에 대한 효용성이라고 그럴까요, 운하의 경제성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에 대한 자료 문제로 인해서 지난 회의에 아주 지리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는 명확한 내용을, 선거법에 저촉되는 여부를 확인해서 다시는 이 문제가 재론되지 않게끔 보다 명확한 건설교통부의 그간의 과정과 자료를 각 위원들에게 보고해 줄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건교부에서 자료를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다 내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건교부가 제출한 자료와 또 건교부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의 진위 공방이 이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근래에 보기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문서에 대한 진위를 위해서 건교부장관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정부 부처와 우리 건교위의 산하기관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러한 행태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대운하에 관련된 진위, 공약이랄까요, 하나의 사업에 대한 옳고 그름의 공방을 떠나서 이 문서에 관련된 사안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가 지금까지 처한 부분에 대한 현안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법안과 청원을 처리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우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그간의 문서에 대한 보고가 끝난 뒤의 과정을 건교부장관이 나와서 간략히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해서 각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질문을 오늘 처리할 안건이 많기 때문에 정했습니다, 미리.

한나라당 위원님들 중에 두 분 그리고 열린우리당에서 두 분 그리고 통합신당에서 한 분 그리고 국중당의 정진석 위원님과 무소속의 정장선 위원께서 대표성을 가지고 오늘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상 질문하시는 위원의 수를 제한한 만큼 그 시간을 지켜 주시고 그 외에 질문이 계신 개별 위원님께서는 본질의를 우리가 법안과 청원에 대해서 할 때에 우리 위원회가 결정한 시간 내에서 질의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소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로 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건교부장관께서는 나오셔서 이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뒤로 오늘 이 시간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고도 명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부대운하사업은 96년도에, 이미 지금부터 11년 전에 세종연구소 등에서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6년부터 98년까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서 경부운하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하반기 들어서 또 경부운하사

업과 관련해서 찬반 내용이 언론에 20여 회가 보도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2005년 12월 9일 수자원공사에 98년 타당성 조사 결과를 현시점에 맞게 보완하도록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국토연구원 소속 전문가와 함께 2006년 초부터 보완작업을 진행했습니다만 고유업무량 과다 등으로 추진이 미흡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월에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서 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 등 3개 기관의 전문가들로 합동 TF 사업을 구성해서 검토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보고서는 수자원공사·국토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 그간 논의된 내용의 중간 결과를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서 정부의 공식보고서는 아닙니다. 또 최종보고서도 수자원공사로부터 아직 정부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TF 재검토는 98년 타당성 조사 시 가정했던 노선이랄지 주요 시설 등 사업계획은 변경 없이 그동안에 물가상승, 물동량 변화, 운항선박 발전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서 재분석한 것이고 또 이 문서가 공개되었을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해서 그동안 건설교통부는 대외 보안을 유지해 왔습니다. 물론 건설교통부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를 비롯해서 관련 기관에서 대외 보안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간보고서와 관련해서 6월 4일 중앙일보에 보도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고 특히 지난 6월 18일 월요일에 건교위원회에서 박승환 위원님, 김재경 위원님, 정진석 위원님 등이 자료 공개를 요구하였고 또 다음날인 6월 19일에는 오전에 한나라당의 이재창 위원님, 박승환 위원님, 김석준 위원님, 김재경 위원님이 저희 건교부장관실을 직접 방문해서 다시 한번 자료 공개를 요구함에 따라 경부운하 중간결과보고서를 건교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국회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선거법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실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에 의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제출을 했더니만 이번에는 제출된 자료가 위·변조되었다 하는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문서의 위·변조는 현재의 정부 시스템 하에서 있을 수가 없

습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어렵더라도 원칙과 정도를 지키고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보고문서를 조작하거나 변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스스로도 30여 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 오고 있지만 편법과 변칙을 철저히 배격해 왔습니다.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원본 그대로 제출을 한 것입니다.

보고서 유출과 관련해서 수사의뢰한 내용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월요일에 37쪽 보고서를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고, 일부 국회의원님들로부터 그 보고서를 제출받아서 6월 19일 우리 직원들에게 심도 있는 검토를 시킨 결과, 5월 7일 제가 보고받은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그 이후에 TF에서 논의된 내용이 상당 부분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감사관실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성·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누군가 외부기관에서 철저한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37쪽 보고서가 TF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작성해서 누구에게 유출되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어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경기경찰청에서 10시가 조금 넘어서 중간보고를, 중간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경찰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날에 어디에서, 누가, 왜 자료를 유출했는지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추측성으로 배후설이니 공작이니 청와대가 뭐 했느니 이런 말씀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일현** 그러면 지금부터 이 문제와 관련된 각 교섭단체와 그리고 우리 비교섭단체를 대표해 주시는 몇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일현** 이와 관련된 것이요?

○**김재경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18일부터 장관의 말이 일관성이 없는 부분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의 자료와 장관의 진술만으로 우리가 객관성을 다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서 우선 TF에 참석했던 건교부의 홍형표·안정훈,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의 고양수·강우원, 국토연구원의 김종원·정일호, 건설기술연구원 김원·김이호,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5월 9일 청와대의 보고가, 지금 원본이라고 수자원기획관실에서 만든 이 9페이지짜리 말고 더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한 권으로 종합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 전체를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그중에 이게 끼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일현** 우리 김재경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참고인, 금방 이 자리에 참석하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재경 위원** 예.

○**위원장 조일현**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했어야지, 지금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먼 곳에서 오기는 뭐하지 않겠습니까?

○**김재경 위원** 배석은 아마 되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배석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조일현** 배석되어 있는 분 계세요?

김재경 위원님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호명해주세요.

○**김재경 위원** 홍형표……

○**위원장 조일현**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있으면 일어서세요.

불러보세요.

○**김재경 위원** 수자원공사 고양수·강우원, 그다음에 국토연구원의 김종원·정일호,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원·김이호, 이렇게 여덟 사람입니다.

○**위원장 조일현** 지금 두 분이 나온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김재경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신 분은 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참고인으로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실 경우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우리가 오늘 이 정해진 순서를 뺀 나머지는 각 위원님들 질문시간에 현안에 대한 질문을 또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연락해서 오실 수 있는 데까지, 가능한 한 이 위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 요구하신 것 있지요?

○**김재경 위원** 예.

○**위원장 조일현** 이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다시 이런 논란이 일지 않도록 정확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나라당 이재창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요점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이용섭 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이재창 위원** 아까 보고 내용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변조·조작이란 용어가 허무맹랑하다, 그러니까 위원들도 좀 삼가해 달라…… 이것 오만한 그러한 자세 아니에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제가 허무맹랑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니다.

○**이재창 위원** 허무맹랑하다고 한 게 아니라 변조·조작 이런 용어가 나온다는 것은, 그 실체가 지금 애매모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어디 국회에서 삼가, 누구보고 삼가 하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발언 삼가 하라는 거예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아닙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곧 나올 테니까……

○**이재창 위원** 아, 글썸, 나오는 것은 나중 얘기고 그간의 지금 추진과정에서 변조·조작 의혹이 있다는 게 우리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삼가해 달라 하는 그런 오만한 자세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그것은 주의를 해 주기 바라고 본 위원은, 속기록에서 이것은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관은 아까 보고를 함에 있어서 전연 건교부로서의 보고에는 의혹을 살 만한 그런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선 6월 18일 우리 국회 상임위원회 때 권진봉 수자원기획관이 우리 박승환 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구성 중에 최근 동향이라든지



또 쟁점 검토 이런 것은 전연 본 적도 없고 작성한 적도 없다 그랬는데 지금 9쪽짜리 이 자료에도 역시 37쪽짜리하고 똑같이 최근 동향과 그 쟁점에 대한 이게 나와 있어요.

본 위원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벌써 첫째 최근 동향에 ‘이전 시장 이하 MB 측 동향’ 이렇게 해 가지고 ‘동향 분석 또 정치권 및 언론동향 그리고 정부 및 관련 기관 동향’ 해 가지고, VIP라는 용어 안 쓴다고 장관이 분명히 지난 6월 18일에 그랬는데 9쪽짜리에도 VIP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또 본 위원이 6월 19일 건교부를 방문해서 당시 이춘희 차관을 비롯해서 기획관리실장한테 구두로 상황을 보고받을 때, 순수하게 수자원 측면에서 98년에 보고서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수자원 문제까지 같이 보고를 하는 중에 이게 하나였다, 여기에는 전연 정치적인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연 그런 지금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자’ 그랬더니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해서 사실 받지를 못했는데, 그날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선관위고 뭐고 그냥 릴리스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날 차관 얘기나 또 장관도 이전에 6월 18일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때 전혀 그런 정치적인 게 없었다 하는데 이 9쪽짜리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의도가 없느냐 하는 이런 의혹을 사기 때문에……

그러면 건교부에서는 안 했다 그러고 실제 나온 문건에는 그런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고 또 실제 작성을 한, 이 TF팀에 참여한 권진봉 기획관의 얘기에 의하면 “이건 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작성한 게 아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건교부에서 낸 9쪽짜리에는 그대로 있고 37쪽짜리 유통된 것에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변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한나라당, 야당의 그 후보의 공약사항인 대운하 사건을 그야말로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보고라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고, 이걸 또 변조를 정말 해 가지고 유통시킨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기 때문에 이게 문제되는 것입니다.

장관도 만약에 이게 실무적인 그런 거라면 굳이 경찰에 의뢰할 필요 없지요, 수사의뢰. 자체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이것 수사의뢰했고 압수수색까지 받았어요?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우선 수사의뢰를 한 것은……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월 18일 위원님들께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가서 내부 TF에 참여했던 팀장, 그 실무팀으로 하여금 이 자료가 어디에서 생성됐는지, TF에서 논의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이것을 점검 검토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서 이 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 한번 추적을 해 보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거기서 조사를 잘해서 결론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공정성 문제 또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가 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자료 유출이라고 하는 게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나 수사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신뢰성·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창 위원** 장관, 이 문제는 지금까지의 진말을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경찰에 이렇게 의뢰해서 속전속결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실체에 대한 것을 우선 건교부 자체에서도 조사를 하고……

조금만 시간 주면 안 되겠습니까? 1분만요.

○**한병도 위원** 시간을 정확히 하도록 했으니까지기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일현** 예.

○**이재창 위원** 앞으로 부족하다면 이걸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건교부로서는 이 문제 때문에 그야말로 신뢰를 잃고 또 자기 자체에서 실무적으로 작성한 서류를 조사하기 위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압수수색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장관께서

옳은 선택인지 국민에게 한번 판단을 구해 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그 9쪽짜리는 저희 실무팀장이 그동안 TF에서 논의된 것을 단순히 정리해서 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37쪽짜리입니다. 그런데 37쪽짜리는 지금 건교부의 실무자들이 작성한 것인지 안 그러면 실무팀에 있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이게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현 단계로서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것은 건설교통부의 신뢰와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일현** 우리 이재창 위원님께서 질문에 들어가시기 전에 장관이 마지막 부분에 한 발언에 대해서, 국회의 권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장관의 표현이었던 것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국회법 제117조에 보면 의원이나 국무위원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그 부기한 내용을 다음날 5시까지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되 취지에 대해서 변경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들어도 그 부분은 안 해도 괜찮을 말을 장관이 미리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국회의장에게 요구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이 있기를 위원장으로서 요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윤두환 위원**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어디 장관이 건방지게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 말하는 것을 갖다 삼가 해 달라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조일현**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두 번째로는 열린우리당의 한병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예, 한병도 위원입니다.

저는 최근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거 대체 중심이 어디 가 있는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이 경부대운하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

는 것인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인지, 96년부터 98년까지 검토보고를 했는데 왜 문제가 났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에서 짝 빠져 있습니다.

현재의 논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보니까요,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로 그 37페이지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한병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시끄러운 이유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9페이지짜리인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한병도 위원** 정부운하 재검토 중간보고에, 첫 번째 보니까요, ‘최근 동향’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장관님!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한병도 위원** 언론에 한 20여 차례 이상 보고가 되고 전에도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타당성 검토보고 하고 이런 국민적인 관심으로 떠오르면 이런 현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다른 사항은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하지요, 다른 사항도.

○**한병도 위원** 당연히 하는 거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한병도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당연한 국민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동향, 동향’ 그러는데, 여러 가지 동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후보의 동향은 당연히 중요시될 것이고 언론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검토하고 있는지 이것을 당연히 보고할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됐던 ‘정부 및 관련 기관 동향’ 두 줄짜리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VIP께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운하가 현실적으로 맞느냐?”, 이 지금 한 줄, 운하가 현실적으로 맞느냐는 이야기가 이 난리를 지금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대가 돼 가지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부운하의 경제적 타당성, 환경 문제 이 내용적인 이야기는 다 어디로 도망가고 이 말꼬리를 잡고 이 쟁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논란의 핵심에서 비켜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미 37쪽 보고서는 건교부에서 확실히 작성하지 않았었다고 했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한병도 위원** 그러면 37페이지로 확대돼 가지고 그것이 밖으로 유출된 것은 이것은 명백한 의도가, 이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찰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명확히 조사를 하면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한 줄, 만찬과정에서 운하가 현실성에 맞느냐라는 최근의 동향 때문에……

자, 요즘 나오는 말들을 보면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 또 엇그저께 언론을 보니까 장관 해임을 해야 된다,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자꾸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없고 이 한 말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 장관 해임까지 나오는 것은 저는 이 부분이 다분히 정치적인 방향으로 현재 흐르고 있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치적인 논란을 접고, 정말 올바른 접근은 여기의 말 한 꼭지가 문제가 아니고 경부운하에 대한 올바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본질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다, 그리고 정말 장관이 부정 부패를 했다든지 아니면 국정을 운영하면서 심각한 장애와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 해임을 하고 하는 것이지, 이 문건의 한 줄로 장관을 해임하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이든 어떤든지 간에 논란이 지금 자꾸 확대 재생산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장관께서 아까 9페이지요. 이것 외에 37페이지는 확실히 건교부에서 작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우선 그날 잘 아시는 것처럼 37페이지짜리를 9월 18일에 제가 처음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위원님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우리 실무자에게 검토를 시켜봤습니다. 9쪽짜리하고 지금 제기된 37쪽짜리하고 같느냐, 틀리냐?

우리 실무자 역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현장에 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라인 바이 라인, 이게

줄별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만 우선 개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저에게 바로 그것을 보고해 준 게 우선 첫 페이지가 보니까 작성 주체가 다르다, 우리가 한 것은 수자원기획관실로 했는데 저쪽은 TF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선 분량이 9쪽짜리하고 37쪽짜리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9쪽짜리의 내용이 일부 37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직원들이 볼 때 9쪽하고 37쪽이고 그리고 결론부분 같은 데도 보면 우리가 작성한 문서에는 ‘우리 부 입장’이라 해 가지고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게 다 삭제되어 있고 또 일부 내용을 제가 5월 7일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서에서는 5월 21일날, 그러니까 한참 지나서 무슨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 그것은 후에 작성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총사업비랄지 수송시간이랄지 수질 악화랄지 이런 내용이 9쪽에 있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게 같은 보고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도 제가 가서 또 다음날도 확인을 시켜 봤습니다만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한병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일현** 한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수자원공사사장님 좀 나오십시오.

본 위원이 작년도 수자원공사 국감에서 경부운하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어요. 그 결론이 마지막으로 죽 공방을 하다가 제가 공사사장에게 “이 경부운하는 현실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없는 거지요?”라고 이렇게 물으니 사장께서 “예, 현 단계에서는 정부 내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조사할 필요는 없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답변을 했어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결호** 예.

○**주승용 위원** 했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결호** 예.

○**주승용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 국감인데 작

년도 초부터 수자원공사에서는 건교부에서 공문을 받고 공문내용은 ‘지역 간 용수 불균형 해소 방안 조사연구 보완 요청’해 가지고 경부운하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재검토, 보완을 요청하라는 공문을 작년 초부터 봤거든요.

그러면 작년도 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 보완을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국감에서 저에게 위증을 한 것이 됩니까. 맞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결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아니,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결론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결호** 그것은 제가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승용 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결호** 예, 이번 검토는 경부운하의 필요성 여부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한……

○주승용 위원 작년도에 죽 검토했어요, 안 했어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결호** 종합적인 검토가 아니고 단순히 98년도 수자원공사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서 검토한 것을 현 물가수준, 물동량……

○주승용 위원 그러니까 검토는 계속 해 왔잖아요, 작년 1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결호** 배의 속도를 대비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것에 제한해서 검토했을 뿐이지……

○주승용 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좋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결호** 운하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가 아닙니다, 이게.

○주승용 위원 사장님, 물가 상승이라든지 현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그것을 검토했다는 것은 운하 자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결호** 아닙니다. 이게 국가 차원에서 운하사업이……

○주승용 위원 저한테 답변할 때는 경부운하 자체가 현실성이 없으니까 그때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결호** 제가 이미 전체를

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운하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검토할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 필요성이……

○주승용 위원 좋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결호**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이런 것입니다.

○주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결호**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주승용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 문제는 더 후에 따지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요, 엇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 “37쪽짜리하고 9쪽짜리하고는 글자체부터 다르다 또 공식 문서에서는 VIP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괜히 부하 직원들로부터 듣고 확인도 안 해 보고 답변한 것이 잘못됐잖아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위원님, 저한테 좀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주승용 위원 그때 그 답변을 하셨잖아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아닙니다. 답변 안 했습니다.

아, 그때 했느냐고요?

○주승용 위원 예,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그 당시에……

○주승용 위원 그래 가지고 괜히 지금 오해의 소지를 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주승용 위원 민감한 문제를 그날 좀 확실하게 알아보고 그런 문제에 대한 답변을 했더라면 이렇게 확대가 안 될 수도 있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런 면도……

○주승용 위원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장관이 9쪽 자료에는 VIP라는 말이 없는데 제출된 것을 보니까 VIP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변조된 게 맞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제가 위·변조를 했다면 VIP라는 말을 빼버리지 뭐 하려고 VIP라는 말을 넣어 가지고……

○주승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 위·변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때 김석준 위원님이 저에게 질의할 때 9쪽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37쪽 얘기를 하시다가 일반론적으로 건교부에서는 “VIP라는 말을 쓰니까?” 제가 속기록을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건교부에서는 정식 공문에서는 통상적으로 대통령님이라고 씁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정식 공문에서는 대통령님이라고 씁니다” 그 말만 했지 제가 9쪽 자료에 VIP라는 말을 쓰지 않았단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주승용 위원** 맞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주승용 위원** 저는 그날……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이 보고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보고서는, 이것은 국민들께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보고서는 우리 팀장이 그동안에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간 약식 보고로 저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사전에 협의도 없고 자기가 보고하면서 거기에다 VIP라는 말을 써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보고를 받을 때는 5월 7일이면 6월 18일, 여기 참석하기 한 달도 더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문건이 하루에 몇 백 페이지에 달합니다.

어떤 때는 장관 24시라고 하는 것이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가 들어오면 ‘경제성이 있어, 없어?’, ‘타당해, 안 해?’ 이런 것만 보지 다 줄줄이 보면서 거기에 VIP라는 말이 한글로 써 있는지 영어로 써 있는지 한 달 전 것을 봤다 해도 기억을 못하고요.

그리고 또 그날 물은 것은, “9쪽에가 VIP라는 말이 있느냐?” 했다면 제가 확인을 하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물으신 게 아니고 일반론적으로 묻기 때문에 저도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VIP라는 말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변조다 하는 말씀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변조하려 했다면 이렇게 문제 있는 것을 고치지 왜 그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안 되는 말

씀입니다.

○**주승용 위원**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통 못해서요.

○**위원장 조일현** 장관 말이에요. 답변을 하실 때 묻는 얘기, 여러 위원들이……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일현**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장관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왔을 때 맨 마지막에 질의과정에서 특별히 할 말이 있느냐, 위원장이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 질의가 계속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질의에만 답변을 하시고……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일현** 우리 주승용 위원께서는 제가 1분을 더 드리겠어요.

○**주승용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요. 그날 장관님은 9페이지짜리만 그동안 봐왔고 37페이지짜리는 처음 봤지 않습니까?

37페이지짜리를 보면서 이 글씨체가 그때하고 틀리다라는 말을 기억도 못하시면서 그날 발언을 하신 것하고 또 VIP라는 말을 우리는 쓰지…… 일반적으로 했지만 그것이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도 안 한 답변을 상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겼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이것을 경찰청에다 수사 의뢰를 빨리 시급히 한 것도 잘했고 또 경찰청에서도 말 빠르게 지금 압수수색한 것은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여하에 따라서 저는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또 한나라당 측에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종 이명박에 대한 의혹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가 마치 배후라는 등 건교부가 배후라는 등 이렇게 지적하면서 지금 최근에 이명박의 위장 전입 문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싹 묻혀 버렸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공세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는 건교부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경찰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일현** 발언을 정리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기 위원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이인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인기 위원 장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장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이인기 위원 9쪽짜리하고 37쪽짜리에 대해서 언론에도 의문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장관께서는 그러면 18일 국회 건교위원회에 나올 때까지 9쪽짜리, 37쪽짜리 문서 2개가 돌았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몰랐습니다.

○이인기 위원 왜 직원들이 이런 것 보고를 안 해 줍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제가 실제 돌아가서 “당신들도 몰랐느냐?” 장관이라고 하는 게 밑에서 보고를 안 해 주면 알 수가 없거든요.

○이인기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우리 간부들도 다 몰랐습니다.

○이인기 위원 몰랐다, 두 번째 그런데 정무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는 18일에 앞서 15일에 최병선 국토연구원장은 “최근 유출된 보고서는 우리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은 문서가 2건이 도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건교부장관, 이 내용을 몰랐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저는 우선 최병선 원장께서 그 말씀을 했는지도 몰랐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직원들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 유출된 보고서가 9쪽짜리로 생각을 한 거지요, 저희는.

○이인기 위원 그렇게 같은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이인기 위원 그러면 이 문서가, 누군가는 하여튼 37쪽짜리 문서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이인기 위원 누군가는, 그러면 이 내용이 건교부나 수자원공사,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에 소속된 TF팀의 누군가가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TF에서 논의된 내용들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TF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면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인기 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이인기 위원 물론 이것 앞으로 수사하면 밝혀

지겠지요, 수사하면.

그리고 여기에 9쪽짜리하고 37쪽짜리 중에서 사업비의 금액에 있어서 9쪽짜리는 16조 8000억 원, 37쪽 유출된 것은 보면 18조 3000억 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왜 그렇다고 보여집니까?

16조가 예를 들면 55조도 아니고 16조가 18조로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많다 할 수도 있고 비슷하다 할 수도 있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이것도 저희가 감사관실을 통해서 점검을 해 봤는데 5월 7일에 저에게 보고할 때까지는 16조 8000억 원으로 TF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5월 10일에 5차 TF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5차 TF가 열린 그 자료에는 이게 18조 3000억 원이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보고가 끝난 이후에 이 자료가 업데이트된 것입니다.

○이인기 위원 그러면 그 말에 의하면, 지금 이야기 분명히 해 주세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이인기 위원 그러면 4월 말, 5월 10일, 5월 25일, 5월 말 이렇게 해서 TF 내용이 변경될 수 있겠지요, 연구의 추진에 따라서? 그러면 18조 3000억 원이 원래 TF 연구내용의 본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TF팀의 내용이 최근의 데이터는 18조 3000억이 맞다는 겁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 이후에 현재 최종 보고서가 나올 때 이 금액이 얼마로 나올지는 저희도 모르지요. 다만 제가 보고받은 9쪽에는 16조 8000억이었는데 왜 37쪽에는 18조 3000억 원이냐, 이게 TF에서 논의된 숫자냐 그것을 확인을 해 봤더니만 저희에게 보고를 하고 나서 그 후에 TF에서, 보고서라고 하는 게 최종 보고서 나올 때까지 계속 바뀝니다.

○이인기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37쪽을 9쪽의 내용보다 부풀려서 근거 없이 한 것이 아니고 장관 말씀은 연구 측정하는 기준시점에 따라서 37쪽이 나오는 그 무렵에는 18조 3000억이라는 내용이 작성……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맞습니다.

○이인기 위원 이 말이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맞습니다.

○이인기 위원 그리 답을 한 겁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이인기 위원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정의

를 내립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이인기 위원** 그다음에 이춘희 차관은 19일에 9쪽 보고서 공개 전에 한나라당 위원들에게, 보고서 제목은 뭐냐 하면 ‘수자원 정책에 대한 현안보고’라 이랬는데 실제 공개된 내용을 보면 ‘경부운하 재검토 중간보고’ 이래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춘희 차관께서는, 이 2개 말고 또 문서가 있는 것 아니냐 언론에서 이렇게 의혹을 부풀려서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5월 9일에 저희 수자원기획관과 수자원정책팀장이 가서 보고를 할 때 경부운하 외에 다른 몇 가지 현안들을 같이 보고했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보고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편철로 하나의 제목으로 묶어 가지고 간 것인지 또는 각각 별건으로 해서 보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바가 없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는 “경부운하 외에 한탄강 댐 문제라든지 그런 다른 현안들과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하는 그 정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의 표지 제목이 뭐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없습니다.

○**이인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장관께서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수사기관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부풀렸든지 위조·변조라든지 해서 이 과정에 있어서 형사상의 범죄가 나온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을 용의는 있다, 그 말씀이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당연합니다.

○**이인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재형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재형 위원** 이용섭 장관은 제가 평소에 같이 근무도 했고 잘 알고 그래서 성실하고 잔재주 피우지 않고 따라서 자신을 팔면서 정부에, 정권에 과잉 충성할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장관이,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장관 태도가 우리 위원회를 너무 경시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아마 본인이 자기의 성실성에 대해서 타격을 받는다고 그럴까, 그것에 대해서 지나친

공격을 받으니까 감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도 조심을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민의 시각에서 본다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64건의 법안과 청원심사를 앞두고 지난번 회의에서도 한 당의 경선후보의 공약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지리하게 공방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오늘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보고 아마 국민은 국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허망하게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건교부장관이 사직 기관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진위의 결과는 바로 나올 텐데 그것을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갖고 토론한다는 것이 참 국민에 대해서 저는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은 공무원들이 보고서가 길면 장관한테나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짧게 보고를 하는데 그래서 37페이지가 9페이지로 축약이 되어서 보고된 것 아닌가 그랬는데 비교해 보니까 이게 또 37페이지면……

이게 9페이지로 언제 작성이 된 겁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9페이지의 작성 날짜는 실무자들이 모르겠고 저한테 보고한 것은 5월 7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5월 9일이었습니다.

○**홍재형 위원** 그런데 37페이지는 5월 20일경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37페이지의 상당 부분은 내용은 5월 9일 청와대에 보고한 이후에 논의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홍재형 위원** 그러면 27일인가 언제 또……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괜찮으시면 이것으로 제가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홍재형 위원** 벌써 시간이 1분도 안 남았는데.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이것 보시면 말씀해소가 됩니다. 조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37쪽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37쪽 보고서하고 9쪽 보고서하고 같으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주신 37쪽 보고서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것은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본문 14쪽이 있고, 산출근거가 14쪽이고, 그리고 98년도 보고서가 9쪽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37쪽이 구성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쪽은 제가 보고받은 9쪽 하고 많은 부분이 유사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얘기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나 많은 의원님들이 “같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같으나 하면, 건교부 중간 보고서와 유사한데 일부 내용을 누락을 하거나 추가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동향’ 부분에 2007년 5월 21일 한반도 대운하 심포지엄이 있었다든지 환경단체 동향 등이랄지 저희한테는 없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결론’ 부분에 보면 우리 ‘건교부 입장’해 가지고 ‘98년 조사결과 타당성이 부족하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또 이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 수송시간, 수질영향 등은 5차 회의시 그러니까 저희에게 보고드린 그다음 회의 할 때 수정된 내용이 여기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문 이것만 있다 하면 우리 자료가 나가서 누가 거기에다 가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출 근거 14쪽은 저도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제가 국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어제 그제 처음 확인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청와대 같은 데는 가지도 않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신문에 났을 때 이것은 TF에서만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14쪽 산출 근거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사업비랄지 수송시간이랄지 수질영향에 대한 숫자는 제가 보고받을 때 청와대 보고받을 때는 전혀 우리는 모른 숫자입니다. 그리고 98년 보고서 9쪽 이것은 공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37쪽 자료는 누가 작성할 수 있느냐? 이 세 파트를 다 아는 사람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파트를 아는 사람은 T/F에 참여했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면 이것은 T/F에서 본인들이 일부러 유출을 시켰든, 안 그러면 외부에서 해킹을 했던 거기에서 나간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에 의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37쪽 자료를 만든다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금방 나타납니다. 필요하시면 이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형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1분만 더 주실 수 없습니까? 없으시면 관두고요.

○위원장 조일현 드리세요.

○홍재형 위원 저는 국민 시각에서 보면 이게 유출이 되었느냐, 안 됐느냐보다는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모 당 경선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종합분석한 대로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 막대한 사업비, 수송시간이 길고 물동량이 적어져 가지고 경쟁력이 없다……

이 비용-편익 수익률을 대개 건교부에서 한 1로 보고 있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렇습니다.

○홍재형 위원 1이 되어야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0.16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홍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대체 사업타당성이 전혀 없는 거다, 그리고 민자를 유치하는데도 도대체 골재 채취할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또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환경훼손 문제, 지금 여기에는 갑문 만드는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중수로 만든다는 것 포함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타당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교부 입장에서 지금도 이런 논란의 중간에서도 자신 있게 그렇다고 믿는 거지요, 지금?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98년 보고서에서는 베니핏-코스트(Benefit-Cost)분석에서 0.24가 나왔고요. 중간보고에서는 0.16으로 나왔습니다만 최종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확실한 숫자가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재형 위원 국민 시각에서 보면 이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것 있으면 좀 보완하고 그러십시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

○위원장 조일현 홍재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진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정책 공방이 정치 공방으로 변질되어 가는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수자원공사 사장님, 한반도 대운하 재검토 지시를 누구에게 받으셨지요? 언제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결호** 우선 한반도 대운하가 아니고 경부운하……

한반도 대운하는 소위 말하는 노선도 다르고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정진석 위원** 98년 수자원공사 검토한 데에 대한 수정 보완 지시를 누가 했느냐는 말씀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결호** 그것은 2005년 12월 9일 건설……

○**정진석 위원** 2005년 추병직 장관이 하셨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결호** 추 장관님……

○**정진석 위원** 추 장관님이 하셨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결호** 추 장관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공문으로 주신……

○**정진석 위원** 추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지요? 재검토……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결호** 문서로 지시를 받았습시다.

○**정진석 위원** 지시를 한 사람은 추병직 장관이었지요? 맞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결호** 예, 추 장관님……

○**정진석 위원** 위원장님,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우리 전체회의 때 이 문제가 다시 다루어진다면 추병직 전 장관을 저는 참고인으로 부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서 변조·왜곡 여부가 문제의 본질인가 저는 생각을 해 봤는데 결국 이것은 결과적으로 철저한 경찰수사 결과 명명백백히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저는 믿습시다.

이용섭 장관께서 시종일관 건교부의 신뢰·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 아무튼 억울하고 답답하다, 이런 심정을 토로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부 역사상 수자원공사 역사상 사실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처음 아니겠어요?

어쨌든 유감스러운 그런 오점을 남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경위가 어쨌든 간에?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정진석 위원** 대통령 후보, 여당 후보건 야당 후보건, 중요한 어떤 정책 공약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나서서 사전에 이것을 검증하고 정부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져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정부가 이러한 문건의 재검토를 통해서 특정 후보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사실이 되었지요?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이 정부의 보고서가 결국은 특정 후보가 제시한 공약의 내용을 전면으로 뒤집는, 공약의 밸류(value)를 현저하게 평가절하 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 특정 후보에게 정부의 힘에 의해서 타격을 입힌 꼴이 되어 버렸지요.

인정하십니까? 장관 답변하세요. 그렇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

○**정진석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 후보의 주요공약이 사실은 당장이 공약이 실행에 옮길지, 안 옮길지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것에 대한 검증을 했던 뭐 했던 선거 전에 특정 후보의 공약은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결과가 되어 버렸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런데 아까 수자원공사 사장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특정 후보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검토한 것은 이번에 이 한반도 대운하가 나오면서 새롭게 검토한 것도 아니고 이미 10여 년 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를 최근 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이렇게 현실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정진석 위원** 장관 보세요. 이 5쪽을 보더라도 ‘주요쟁점 검토’ 해 가지고 말이지요. MB 측 안대 TF 재검토 안, 1번 MB 측은 이렇고 TF 측은 이렇고, 2번 MB 측은……

MB라는 게 특정 후보의 이니셜을 얘기하는 거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정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 문건을 가지고 이게 논란이 되고 소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에게는 상당한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쳤고,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한 거예요. 그렇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자료가 밖에 나가지 않기를 바랐고……

○**정진석 위원**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런데 저는 그 부분

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미 96년도부터 얘기가 되었고 금액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5조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고 매일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고……

○정진석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한 연구용역을 줄 수 있고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관련 정부 몇몇 사람들만 알고 금고 안에 있다면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유출이 되었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결과론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래서 관리상에 허점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정진석 위원 정책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과연 그러한 공약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조심히 조사해 볼 수는 있겠지요. 결과적으로 이 문건이 세상에 유출됨으로 해 가지고 어떤 특정 후보에게는 타격을 주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정부도 결과론적으로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 본 위원 주장의 요지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이겁니다. 누구의 책임문제 이런 것은 향후에 있을 수사 결과나 이런 것에 뒤따라서 규명될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이런 일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의무가 소홀히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일현 다음에 마지막 순서로 정장선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장선 위원 핵심 부분에 대해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조를 했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정장선 위원 변조라고 하면 37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9쪽 짜리는 보고를 받은 것이고, 그렇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아니, 어제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님들 말씀은 어제 저희가 화요일 날 제출한 9쪽을 변조해서 제출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장선 위원 9쪽을 변조했다고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정장선 위원 원래 문제가 된 것은 37쪽이 바깥으로 나갔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는데 여하튼 어제……

○정장선 위원 아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엄청나게, 변조를 하려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한 1조……

그러면 9쪽짜리는 오히려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9쪽 짜리를 변조했다면 예산이 1조가 줄어들게 되어 있고, 또 만약에 37쪽 짜리를 변조했다면 오히려 48시간이 46시간으로 줄어들고 환경오염부터 나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도 얘기가 되지를 않고 변조하려면 확실하게 변조해야지 이렇게 어정쩡하게 변조할 리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위원님, 내용 자체는 37쪽도 변조가 없습니다. 다만 TF에서 논의한 내용이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달라졌을 뿐입니다.

○정장선 위원 그래서 제가 변조를 이렇게 어수룩하게 할 리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 하여간 변조를 하지 않았다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 조사결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유출 가능성에 모아지고 있는데 유출 결과가 그러니까 경찰조사가 나오면 유출 당사자에 대해서 엄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유출시킨 사람이 있으면 법령에 정해진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지요.

○정장선 위원 아까 김재경 위원님께서 자체조사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자체조사를 만일에 하면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경찰조사를 시킨 것 같은데 경찰조사까지 시키게 된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실은 저희가 6월 18일 날 37쪽의 자료를 한나라당 의원님들로부터 처음으로 받아 가지고 우리 내부 감사관실을 통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면서 이러한 자료가 포함된 그런 일부 자료가 확보되어서 실은 경찰청에 수사 협조하는 의미에서 넘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스스로 경찰청으로부터 건설교통부가 압수 받는 것이 참 아픈 것이지만 사회적 관심사가 또 크고 공정선거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하는 우리 정부도 의지도 보일 겸 이것은 확실히 밝히는 게 좋겠다 해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어 주지 않는 현실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장선 위원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이 경우엔 하 문제는 완전히 특정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기록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문제가 자꾸……

제가 볼 때 MB 측이라고 하는 특정 후보를 옹호하는 단체에서 나온 것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가 높다는 옥수학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B-C가 0.02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수질오염이 엄청나게 될 것이라는 결과도 나오고 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변조 조작으로 몰고 가서 이 본질을 흐리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이 문제는 워낙 중요한 문제이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검증이 철저하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변조 또는 위조로 몰고 가는 그런 것보다는 경찰 조사를 지켜본 뒤에 거기에 따라서 책임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묻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그 후속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이것을 변조로 몰고 가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아까 장관께서 삼가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이것을 계속 변조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 문제는 또 별도로 타당성 문제는 계속 논의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교부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래서 37쪽을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해 보기 전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참석했던 실무자들 또 감사관실을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이 내용 자체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자체는 다 TF에서 논의된 내용이고 그래서 문제는 그렇다면 TF에서 논의된 자료를 누가 누구에게 유통시켰을 것인가 그게 문제이고, 내용 자체는 TF에서 다 논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출된 사람이 수사에서 밝혀질 테니까 그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선 위원 알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일현 예, 강창일 위원 말씀하세요.

○강창일 위원 장관님 말이지요, 수사에 영향을……

○위원장 조일현 저기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을 보고 하는 겁니다.

○강창일 위원 듣고 하세요.

○위원장 조일현 예?

○강창일 위원 제가 보기는 어디를……

어디를 봐도 괜찮잖아요. 여기 봐도 되고 저기 봐도 되고……

○위원장 조일현 어디를 보는 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강창일 위원 얘기를 들으라고요. 얼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조일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창일 위원 아니,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위원장 조일현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창일 위원 그러면 되잖아요. 누구를 보느냐고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위원장 조일현 그런데 왜 장관을 부르고 얘기합니까?

○강창일 위원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인하고서 이쪽 보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뭘 그것을 가지고……

○위원장 조일현 확인도……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을 분명히 얘기하세요, 위원님!

○강창일 위원 확인 먼저 하고 그쪽으로 질문한다고요.

○위원장 조일현 확인도, 의사진행발언은, 장관의 확인도 위원장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강창일 위원 얼굴 보고, 안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누구를 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말

이 되냐고요.

○**위원장 조일현** 중요하지,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창일 위원** 내용이 중요하지, 위원장님이 몰라서……

사회를 제대로 보세요.

○**위원장 조일현** 무슨 말씀 하시고 계세요?

○**강창일 위원** 허 참, 얼굴 누구 보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위원장 조일현** 장관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강창일 위원** 확인을 먼저 하고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일현** 글썄 확인을 위원장을 통해서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강창일 위원** 그러면 내가 하늘을 보고 얘기하겠습니까. 아, 나 참! 그러면 무슨 말씀을……

얼굴 보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지요.

○**위원장 조일현** 얘기하세요.

얘기하시는데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의사진행을 하게끔 얘기하는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강창일 위원** 위원장 보고가 아니라 위원장께 하는 거지요, 보고가 아니고.

무슨 말씀 하세요?

자, 얘기를 하겠어요.

아까 수사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했어요. 그것을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TF팀에서 자료를 유출했다”라는 식으로 예단을 하고 있어요, TF팀에 참여한 사람이. 그것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말이지요……

지금 보고 얘기할게요.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 37쪽 짜리가 3개를 짜집기했을 가능성이 있군요. 딱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짜집기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아까 장관은 TF 팀의 장이라는 사람이 했을 것이라고 해서 예단을 해서 얘기해서 수사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용섭 장관 보고를 취소시키든지 속기록 삭제를 하든지 제가 확인을 한번 위원장님께서 해 주세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위원장 조일현** 지금 강창일 위원께서 장관에

게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을 정확히,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한 발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세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일현** 그러면 직접 얘기하세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38쪽 자료에 포함된 내용들이 TF에서 단, 대부분 논의된 내용들이라는 우리 실무 TF 참여자 그리고 감사관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TF에 참여한 사람이 유출을 시켰는지, 안 그러면 외부에서 해킹을 해 갔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일현** 장관의 답변으로 강창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결론이 난 것으로 같음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하고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의사진행을 한다는 것은 불고지의 사실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어떻든 우리가 안전으로 현안 사안을 올려서 여러 위원들께서, 또 일부 위원들께서는 발언의 순서를 양보해 주시면서 회의 진행에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조일현** 아니, 제 말씀이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안에, 현안에 대한 결론을 지은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재창 위원** 예.

○**위원장 조일현** 그때 제가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꼭 1분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재창 위원** 글썄요, 지금 연속선상에서 1분만……

○**위원장 조일현** 좋습니다.

그러면 짧게 이재창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우선 장관께, 앞으로 뭐든지 다 연구할 수 있다 이런 자세인데 그러면 앞으로 대

통령 후보 어떤 사람이 다 공약한 사항은 지금 대운하처럼 이렇게 검토보고를 할 겁니까?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국민생활에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부대운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재창 위원** 특수성은 이것이 아니고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하는 그런 것 나왔을 때, 만약에 정부에서 그것 검토해서 기다, 아니다 했을 때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대운하만이 아니고……

대통령이 공약하는 것은 국정 중의 중요한 사항을 공약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정부 각 부처가 이런 식으로 전문기관을 시켜서 TF팀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부처가 하는 업무는 이제 어차피……

○**이재창 위원** 부처가 하는 업무가, 아무리 그 소관 사항이라 하더라도……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위원님, 제가 답변 좀……

○**이재창 위원** 정치적인 하나의 중립을 지켜야 될 정부 입장에서……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저희는 중립을 지킬 겁니다.

○**위원장 조일현** 장관, 이제 그만 답변하세요.

○**이재창 위원** 뭐든지 관계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 정부로서 선거에 관여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 저는 이래서 절대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요구자료 제출에 말이지요. 본 위원은 이것이 의도적인 게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합니다.

국회 제출 배경에 무슨 의원들이 가서 요구를 했다는 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분명히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방문해서 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보고서에는 이것을 일언반구, 위원회에서 제출 요구가 있어서 했다는 얘기는 빼고 무슨 국회의원 개개인이 가서 요청을 해서 한 것처럼 한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제가 판단하기로는 6월 18일에 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저희한테 자료제

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재창 위원** 아니, 어떻게 돼서 그 보고서를 작성했고 하는 그 전말 경위를 포함해서 내용을 보고해라 하는 것이 그날 내용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경위는 그랬습니다.

○**이재창 위원** 글썽, 여기 경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왜 국회의 제출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장관님께 그렇게 지시한 것은 위원회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항은 보고서에 싹 빠졌어요. 마치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방문하고 요구해서 낸 것 마냥 말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정하세요. 확실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고받고 논의하는 것도 바로, 이게 개개인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구해서 한 것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지난번 6월 18일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자료 내라고 한 것에 의해서 오늘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 내용은 수정을 해서, 앞으로 보고서에 반드시 수정·첨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일현**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느 특정후보나 정당 공약의 적합과 부적합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1안으로 올려서 한 것은 건설교통부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실성과 그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내용에 대한 의안으로 제1안을 올려서 의논했다는 것을 명지해 주시고, 건교부는 방금 전 이재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서를, 이 과정을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것은 위원장이 그때 한 얘기지요.

그러나 빨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지만 이런 자체가 의혹 아닌 의혹과 불신 아닌 불신을 불러온다, 이 부분에서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보고하는 데 있어서 쓰는 어휘든 그리고 자료든 좀더 신중과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에 장관의 보고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은 의원이든 국무위원이든 본인만이 국회의장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홍재형 위원께서도 지적하셨고, 적절한 시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진석 위원께서 얘기하신, 다음에 우

리 위원회가 열린다면 추병직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이 결과가 나오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 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또 얘기가 되겠지만, 그때 각 당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의논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과 관련된 보고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김재경 위원께서 참고가 될 만한 사람 8명을 이 자리에 해당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정훈, 고양수 두 사람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15시에 김종원이 가능하고, 그다음 14시에 김원 수자원 연구부의 수석연구원 도착이 가능하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해당 기관에서 조사받는 데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2시05분)

○위원장 조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법안과 청원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결할 사항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오늘의 법안 내용과 청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의사일정 제18항~제21항과 법률안이 유사하기 때문에 병합심사를 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에 올려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4항까지 정부가 제출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7건의 법률안과 정화원 의원이 소개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의 시행령 폐지 검토에 관한 청원 등 16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영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일현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이영순 위원 어제까지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된 상정 안건에 47항, 48항이 없었습니다. 47항, 48항, 두 항이 새롭게 올라온 거지요?

○위원장 조일현 47항이 원래 없었는가요,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48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일현 48항뿐이지요?

○이영순 위원 48항인가요, 48항만?

○위원장 조일현 예.

○이영순 위원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일현 47항은 아니고 48항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48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애초에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오늘 아침에 협의가 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시점이 2007년 4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이 회부일 이전에 산적해 있는 법안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특별히 시급하게 올라와야 되는 그런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요.

그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각각의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되지 않은 채로 이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거든요.

○위원장 조일현 이영순 위원님께 대단히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의사일정을 짜는 것은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시는 간사님들의 의사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이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소위 이 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야 소위원회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중요성이라고 그럴까요, 또 법률안이 내포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복잡성 때문에 이 공청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선정이라든가 또 그 운영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 우리 간사 위원들 간의 토의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상정은 하되 공청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소위에 넘길 수는 없고 공청회를 밟자, 그 공청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더 의논하자는 전제하에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 3당 교섭단체

간사님들 합의에 의해서 상정하게 됐고 이것은 마지막, 법안소위에 올라갈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영순 위원님이 제기 하셨는데 그렇게 간사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상정된 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비교섭단체에 소속하신 이낙연 위원님이나 이영순 위원님이나 또 최재성 위원님에게 위원장이 사전에 일일이 설명을 못 드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일단 제가 이의 제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 안건이 특별히 시급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 발의 시점도 충분히 여유가 있게 발의된 것도 아니고요. 그 이전에 더 시급한 법안이,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기에 충분한 여유가 없어서 아직도 다루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부터 먼저 다루고 나서 다룬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채 이렇게 시급하게 올라온 이유를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와 유사하게 논란이 됐던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가서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처리 여부를 지켜본 연후에 이 법을 해도 늦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급하게 지금 우선 상정만 해 놓고 공청회 일정을 기다린다고 다른 순서를 밟을 필요가 아직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은 지금 위원회의 상정을 보류시키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일현**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일현** 아니, 가만있어 보시지요. 위원장이 얘기하겠습니다.

말씀드리건대 지금 우리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나름대로 처리하는 관례도 있고 처리할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를 통과해서 소위 법사위원회에 가 있는, 지금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법안과 연관성이 있고 그것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정보라면 정보고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모든 것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교섭단체 간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표결에 부쳐 주십시오.

○**위원장 조일현** 표결에? 상정 여부를, 원래 표결은 동의와 재청이 있어야 되거든요.

표결에 동의하십니까?

○**주승용 위원** 제가 그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일현** 주승용 위원 말씀하세요.

○**주승용 위원** 주승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께서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이 갑자기 이렇게 상임위에 상정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3당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올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고요.

물론 모든 법안이 다 중요하지요. 다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간사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먼저 접수된 법안부터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접수됐다 하더라도 봤을 때 정말 아주 시급한 법안, 또 정부 측에서 이것을 꼭 먼저 다뤄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은 정부 측에서 제출한 법안 중에서, 물론 이것은 정장선 의원 입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 측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 중에서 시급하게 요구하는 법안 1번입니다. 우선순위 1번이었습니다. 우선순위 1번이었고, 그래서 이것이 상정됐고, 또 지금까지 관행에 의해서 정부 측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연안특별법하고 이 법이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는 비슷합니다마는, 또 지역이 겹친다는 부분에서는 좀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연안권 발전특별법은 규제를 완화한 법이고, 이 서남해안 낙후지역 발전 특별법은 주로 재정 지원 및 규제 완화법이고, 전연 다른 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안소위에서도, 지난 법안소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법이 거의 비슷한 법안이면 같이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집행부에서 이 법은 좀 다른 성격의 법안이다 해서 저희들이 연안권발전특별법을 상임위원회에서 독자 처리를 했다는 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처리하

게 됐다는 것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시종 위원 저도……

○위원장 조일현 이시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시종 위원 이영순 위원님에게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주승용 위원님께서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이 정부 측이 요구하는 1번이다 그랬는데 건교부장관, 이게 1번이 맞습니까? 이게 가장 시급한 겁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1·2·3번, 번호를 매기기는 쉽지 않았지만 정부에서는……

○이시종 위원 대한민국에……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는 법안입니다.

○이시종 위원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국토, 4800만 5000만 국민들에게 다 적용되는 법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지역 발전을 위해서 법이 자꾸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법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법안의 성격을 보면 특정지역 발전, 특정지역 무슨 보호, 이런 법안이 자꾸 양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재고해 봐야 될 사항 중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남권에 특별히 하면, 이것은 전 국토에 다 해당되게 하라 이거예요. 서남권등 낙후지역이 아니라 모든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법 이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서남권등 하나까 동해안이 또 들어가고 남해안이 들어가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은 재고가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물론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이 건교부장관에게 시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보다 먼저 제출했던, 기업도시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가 작년에 제출했습니다.

건교부장관, 제출한 지가 1년이 됐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이번에 다루지 않는 겁니까?

지금 기업도시를 정부에서 육성하는데 기업도시를 만들어 놓고, 모든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도 지원해 주고 폐수처리장 지원해 주고 다 지원해 주는데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지원도 없고 폐수처리장 지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육성하는 기업도시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일반 산업단지, 민간이 하는 지방 산업단지까지 전부 다 지원 시설을 해 주는데 왜 기업도시는 안 해 줍니까?

그러면 그것을 해 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제가 제출했는데, 이것은 모든 기업도시에 다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법은 이번에 왜 안 달아 주느냐 이거예요. 무슨 판단에 의해서 이 서남권은 중요해서 갑자기 들어갔고 기업도시, 우리 모든 기업들에 다 해당되는 그것은 왜 빠졌습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해명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에 기업도시 관련 개정안도 같이 좀 상정이 되기를 제가 여기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일현 이시종 위원님, 모든 법안이 도착하는 순서로 해야 된다는 것을 위원장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시종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위원장은 간사님들의 합의를 존중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시종 위원 간사님들이 합의한 것 이외에 새로운 사항이 나타나면, 또 기업도시 관련 특별법을 개정하고, 이번에 상정시켜 가지고……

○위원장 조일현 그러니까 그것을, 필요하신 이시종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듯이 또 간사님하고 의논하셔서 상정도 할 수 있고 이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냐 안 통과시킬 것이냐는 또 소위를 거쳐서, 이번 전체 토론을 통해서, 법안이 온다고 다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시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토론과정에서 하시기로 하고 지금은 의사일정 과정에서 이 법을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그러면 이시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것으로 봐서 제가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뜻을 물어서 상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상정에 반대하시는 분……

○주승용 위원 잠깐……

○위원장 조일현 가만히 계세요.

의사일정 제48항을 상정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러면 우리 두 위원님의 말씀은 우리 위원회 운영과정이나 법안의 성격으로 봐서 일리 있는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과 간사님의 뜻을 존중해서 원칙을 가지고 법안의 상정을 또 심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번은 의안대로 함께, 방금 전 속기록에는 기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법안 47건 그리고 청원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시종 위원** 그러면 48항에 대해서 표결로 결정했듯이……

○**위원장 조일현** 그렇지요.

○**이시종 위원** 그러면 간사회의에서 합의가 안된 기업도시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물어 가지고 이번에 상정을 하던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조일현** 아니지요. 이것은 간사회의를 통해서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고 이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아직……

○**이시종 위원** 아니, 간사회의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사회의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위원장 조일현** 회의에 이것을 좀, 서로 간에 조금 자제하시고, 이시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과 열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그 법도 빨리 심의하도록 함께 노력하십시오.

**2.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엄호성·정희수·김석준·안명옥·진수희·차명진·서병수·안홍준·정병국·이계진·배일도 의원 발의)**

**4.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유필우 의원 대표발의)(유필우·장복심·신학용·한광원·원혜영·김정권·김교홍·정장선·박상돈·강길부·변재일·신국환·문석호·주승용·양형일 의원 발의)**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

**발의)(노영민·윤호중·우원식·신중식·우윤근·장향숙·주승용·이은영·장복심·조경태·김동철·정장선·박상돈·장경수 의원 발의)**

**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구논회·이영호·정성호·황우여·노현송·김태년·엄호성·이계안·민병두·강혜숙·우제창·정두언·정동채·박상돈·홍미영·윤원호·김재홍·이광철·이경숙·박명광·우상호·김재윤·우윤근·장향숙·문석호·김영주·양형일·신기남·최재성·안영근·유승희·오제세·김형주·강성종·이원영·심재덕·정의용·배기선·유재건·김희선·김종률·김현미·최병국·박기춘·신학용·강기정·송영길·이근식·장경수·정장선·이강래·주승용 의원 발의)**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오을 의원 대표발의)(권오을·신상진·이성구·김정권·김우남·황우여·이계경·이해봉·정의화·정성호·김학원·박상돈·엄호성·이인기·김명주·안상수 의원 발의)**

**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김명주·이성구·황우여·이경재·신상진·이인기·김태년·김학원·김종률·박상돈·안영근·최경환·엄호성·박재완·서재관·박찬숙·이계진·안병엽·이해봉·심재덕·고조홍·임해규 의원 발의)**

**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고조홍·김송자·김효석·박재완·서재관·신중식·이상열·이인기·이인영·전병헌·정성호·정진석·채일병·최인기 의원 발의)**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이성권·박형준·신상진·권철현·이명규·김정훈·유승민·최경환·송영선 의원 발의)**

**1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강길부·고조홍·김성곤·김우남·박상돈·박찬숙·서재관·신중식·신학용·이인기·이종걸·이해봉·장복심·정성호·채일병·최성·황우여 의원 발의)**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최인기·엄호성·신상진·최성·이해봉·김태년·노현송·이영호·고**

조흥 · 유재건 · 안상수 · 심재덕 · 이석현 · 변재일 의원 발의)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 발의)(안명옥 · 정문현 · 이성권 · 배일도 · 이명규 · 이윤성 · 엄호성 · 안상수 · 이계경 · 최철국 의원 발의)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 발의)(박상돈 · 강길부 · 우제항 · 변재일 · 양승조 · 신학용 · 이종걸 · 최규식 · 김태년 · 서재관 · 장복심 · 주승용 · 염동연 의원 발의)
15.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윤두환 · 이진구 · 허천 · 고흥길 · 김영덕 · 차명진 · 조일현 · 김태환 · 정희수 · 진영 · 고희선 · 김석준 · 김재경 · 유정복 · 최규식 · 박승환 · 이인기 의원 발의)
17. **고속철도 역세권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주성영 · 박세환 · 이진구 · 이해봉 · 임인배 · 김태환 ·곽성문 · 김광원 · 정종복 · 유승민 의원 발의)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 강혜숙 · 구논회 · 김동철 · 김중률 · 심재덕 · 양승조 · 오제세 · 이시중 · 이해봉 · 정문현 · 정성호 · 정장선 · 주승용 의원 발의)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허태열 · 박세환 · 이인기 · 이성권 · 김명주 · 박형준 · 서상기 · 김학송 · 김영선 · 박재완 · 김태환 · 이명규 · 이계경 · 김정훈 · 김양수 · 심재엽 · 박승환 · 안홍준 · 이해봉 의원 발의)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창 의원 대표발의)(이재창 · 고조흥 · 김정권 · 김재원 · 김재윤 · 박상돈 · 신국환 · 신상진 · 안경률 · 안상수 · 안택수 · 이계경 · 이성권 · 이인기 · 정갑윤 · 정문현 · 정성호 · 정의화 의원 발의)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김양수 · 정갑윤 · 이계경 · 정화원 · 신상진 · 최구식 · 안홍준 · 유기준 · 김기현 · 김명주 의원 발의)

23.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안 의원 대표발의)(이계안 · 강길부 · 김명자 · 김선미 · 김희선 · 박상돈 · 백원우 · 우제창 · 이기우 · 이목희 · 이미경 · 이은영 · 홍미영 의원 발의)
24.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서재관 · 양형일 · 우제창 · 변재일 · 이종걸 · 이근식 · 장복심 · 조일현 · 박상돈 · 노현송 · 이영순 · 유선호 · 최규식 · 주승용 의원 발의)
2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 · 이인기 · 이해봉 · 정화원 · 이강두 · 신상진 · 강기갑 · 김명주 · 안영근 · 엄호성 · 김영덕 · 정문현 · 안병엽 · 유승민 · 이방호 · 김우남 · 김광원 · 조일현 · 김낙성 · 김태년 · 신중식 · 이상배 의원 발의)
26.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 · 주승용 · 노영민 · 우원식 · 김낙순 · 선병렬 · 우제항 · 조일현 · 장항숙 · 신중식 · 유선호 · 한광원 · 한화갑 의원 발의)
27.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김애실 · 이계경 · 박상돈 · 이인기 · 박찬숙 · 박재완 · 이해봉 · 이한구 · 박형준 · 정희수 의원 발의)
28.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 · 김재원 · 이성구 · 신상진 · 박재완 · 이계경 · 이해봉 · 이재창 · 공성진 · 김선미 의원 발의)
29.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강길부 · 배일도 · 이인기 · 김석준 · 박재완 · 이한구 · 김태환 · 김성조 · 정갑윤 · 임태희 · 유승민 · 고조흥 · 김애실 의원 발의)
30.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 · 강기정 · 윤호중 · 김선미 · 송영길 · 유승희 · 김태홍 · 양승조 · 안명옥 · 이원영 · 김영주 · 신중식 · 구논회 · 이광철 의원 발의)
3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고조흥·김기현·김명주·김학원·신상진·엄호성·이인기·이해봉·정문헌·정화원·차명진·최경환·최성 의원 발의)

**3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김교흥·김영주·김영춘·김재운·김태년·민병두·오제세·우상호·우원식·유승희·이경숙·이미경·임종석·한병도·홍미영 의원 발의)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선병렬·권선택·유재건·장복심·장영달·구논희·정성호·서갑원·우제창·우윤근·이영호·양승조·송영길·이은영 의원 발의)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 의원 대표발의)(문학진·김동철·김재홍·김태년·김형주·노현송·배기선·배일도·백원우·서병수·서재관·유재건·이해봉·장향숙·정성호·정장선 의원 발의)

**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우원식·노영민·김형주·장향숙·홍미영·박상돈·서갑원·노현송·김태년·정성호·최규성 의원 발의)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천정배·양승조·김재운·김교흥·정봉주·강기정·윤호중·이미경·이상경·서혜석 의원 발의)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허태열·김무성·김정권·이성구·엄호성·신상진·박종근·이계경·임해규·박형준 의원 발의)

**38.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임종인·우제창·양형일·김재운·박기춘·문병호·최규식·현애자·조성래·김태홍 의원 발의)

**39.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김교흥·문학진·박상돈·서재관·유필우·정성호·주승용·한병도·홍재형 의원 발의)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허태열·김종률·김무성·이해봉·박상돈·신상진·이인기·황우여·김정훈·이성권·안경률·고조흥·서병수·엄호성·정형근·안상수·김희정·박재완 의원 발의)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신상진·우제창·이경재·주성영·김성곤·이원복·김태년·이인기·오제세·이계경·김정권·고조흥 의원 발의)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김교흥·김영주·김영춘·김재운·김태년·민병두·오제세·우상호·우원식·유승희·이경숙·이미경·한병도·홍미영 의원 발의)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경재 의원 대표발의)(이경재·박세환·신상진·유정복·김형주·신명·황우여·박종근·신중식·김기현 의원 발의)

**45.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홍준표·단병호·한광원·김영덕·권영길·이해봉·이혜훈·김정훈·김영선·김종률·박승환·서상기·안홍준·정갑윤·이명규·신상진·박재완·임해규·송영선·이재오·배일도·이성권·김용갑·이방호·조성래·정진섭·권오을·이인기·이인제·김학송·박세환·조경태·이상득·문희·원혜영·정희수·김양수·박종근·한선교·안상수·황진하·나경원·고경화·문학진·안영근·김태환·차명진·엄호성·이화영·이경재 의원 발의)

**4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고조흥·김광원·김명주·김용갑·김우남·김재경·김충환·신상진·안상수·안영근·엄호성·윤두환·이상배·이인기·이주영·이진구·임인배·정의화·정희수·차명진·황진하·허천·허태열 의원 발의)

**4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최인기·김정권·문학진·최규성·유승민·최병국·김재운·채일병·정의화·이낙연·주성영·김종률·

김효석·이계경·박상돈·오제세·유선호·고조홍·손봉숙·채수찬·임인배·김형오 의원 발의)

- 48.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강기정·강길부·강창일·김근태·김동철·김부겸·김선미·김성곤·김성조·김송자·김원기·김춘진·김태홍·김효석·문학진·민병두·배기선·서갑원·선병렬·송영길·신국환·신중식·안영근·양형일·염동연·우윤근·원혜영·유기홍·유선호·유인태·이낙연·이목희·이미경·이상민·이상열·이시종·이인기·이인영·이해찬·임종석·정동채·정두언·정봉주·정의화·조배숙·채일병·최규성·최인기·최재성·한명숙·한병도 의원 발의)
- 49. 중앙선·경춘선 소음방지를 위한 망우역 일대 터널화에 관한 청원(임인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 50.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군 강상면 구간 노선(안) 개선에 관한 청원(정병국 의원의 소개로 제출)
- 51.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김원웅 의원의 소개로 제출)
- 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김영춘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 5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김덕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 54. 주택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영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
- 5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김춘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
- 56. 개인택시 차고지 확보 폐지에 관한 청원(최재천 의원의 소개로 제출)
- 5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 조속처리에 관한 청원(이주영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 58.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사업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영순 의원 외 16인의 소개로 제출)
- 59. 경매완료된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구제에 관한 청원(유선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 60. 오미재터널 공사 착공 요망에 관한 청원(박세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관한 청원(유재건 의원의 소개로 제출)
- 62. 신안산선 대림삼거리 역사 유치에 관한 청원(전병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
- 63. 비주거 건물의 위반시설 자진철거 대책마련과 일부 양성화 요구에 관한 청원(이낙연 의원의 소개로 제출)
- 64.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의 시행령 폐지 검토에 관한 청원(정화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시19분)

○위원장 조일현 그러면 법률안 47건 그리고 청원 1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한 마음도 드리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참으로 위원님들 모시기가 어려워 회의 운영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해를 구하고 미리 의결할 것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드릴 말씀은 우리가, 지금도 자꾸 가신다고 그러는 위원님들을 제가 붙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회의 도중에……

지금도 위원장에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고 못하시는 뜻을 밝혀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오늘 제안설명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끝내고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신 뒤로 내일 소위에 이것을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일이 있으실 경우는 모르지만 우리가 검토보고와 그다음에 제안설명을 다 듣고 토론이 끝난 내중에 내일 소위에 회부하는 것을 미리 의결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를 통해서 결론이 나면 이 부분은 내일 소위에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문제가 되었던 48항 서남권 문제에 대해서는 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또 다른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에 회부하는 것은 공청회와 다른 절차가 끝난 뒤에 회부하는 것으로 하고 소위에 넘기는 것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과정에서 경의선 가좌역 사고와 목포-광양 고속도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조사단 구성에 관해서 우리가 의결하고자 했으나 그때는 또 교섭단체 간의 의견이 위원장에게 보고했던 내용과 틀려서 의결 직전에 철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간사 간 합의를 해서 가좌역 사고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파견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가좌역 사고와 관련해서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조사단 구성 그리고 조사일정, 활동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정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한 후에 실시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발의 또는 소개하시는 의원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해 주시고 또 양해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발의자를 대표해 오셨던 우리 이미경 의원께서 의안 1안 때문에 기다리다 가셨답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4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 가지고 이재창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의원** 존경하는 조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 여러분!

경기 파주 출신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보상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으로 인해 해당 주민과 기업들은 정든 터전을 떠나거나 기업활동을 접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토지 등을 수용당한 주민들도 개발된 자신들의 터전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토지 등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은 물론, 수용되는 공장 등도 지속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행 법·제도상 복잡한 공장설립 절차와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서 공장설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마땅한 공장용지 확보도 어려워 수용되는 공장들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은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익사업이 원래 목적에 부합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당한 주민과 기업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등을 수용당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주민들도 개발된 자신들의 터전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과 채권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공장이 수용되는 경우 인근 지역을 이주단지로 개발하여 우선 분양하게 하는 내용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함으로써 해당 공장들이 지속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주대책의 내용으로는 인근 산업단지에의 우선 입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로 조성되는 공장용지의 우선 분양, 공장이전비의 지급 등으로 하는 이주대책 마련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대토보상도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수용된 공장 등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역시 국내의 생산 기반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나 공장 등을 수용당한 주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자발적으로 토지 및 공장을 수용당하는 주민들에게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일현 이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2항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또 의사일정 제4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발의자이신 김애실 의원님과 그리고 최재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기로 했는데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 의원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지요? 안민석 의원님의…… 서면은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발의자를 대표해서 강창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의원 존경하는 조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주시갑 출신 강창일 의원입니다.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고 한편으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선 비행기표 끊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런 용어로 표현되고, 요즘 항공대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제주도를 오지 못하고, 비행기표 예약을 못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해외로 나가는 형국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부유출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차도 고속도로도 없는 비행기, 항공은 필수적인 교통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직도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가 있지 않느냐,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비행기 문제는 1999년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국가의 통제·규제하에 있었습니다마는 항공 자유화라는 미명 아래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기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 필수 교통수단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많은 문제, 시장원리에 맡기다 보니까 공익성의 문제가 완전히 소홀히 되고 수익성만이 얘기되면서 항공편 수가 줄어들고 비행기도 잘 뜨지 않는,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항공편 수가 매일 하루에 4000명 이상 좌석이 감소되면서 과거에 탑승률이 70%였던 것이 지금은 92%, 평균해서 92% 이상이 돼 버렸고 성수기에는 무려 95%까지 치솟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선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 항공운송이 필수교통수단이 되는 지역 또는 항공운송의 여객수송분담률이 일정 규모 이상인 지역의 경우에 한해서는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간항공사의 무차별적인 항공운항편 수나 좌석 수 감편이 항공대란을 초래한 주 요인이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운항편 수나 좌석 수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꿈으로써 그 공공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항공운송을 담보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건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여객수송분담률이 100분의 70 이상인 지역의 경우 국내 항공노선의 항공운항편 수 또는 항공운항 좌석 수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항공운송의 여객수송분담률이 전체 여객수송의 70% 이상인 지역의 국내 항공노선인 경우에는 여객의 운임·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 대한민국 영토인 제주 지역에서 벌어지는 항공대란을 해소한다는 취지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오셨습니까? 아, 오셨구나. 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아까 하도 우리가 길어서 가신 줄 알고.

발의자를 대표해서 존경하는 황우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황우여 의원 인천 연수 출신 황우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일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헌법 제20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종교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종교 인구가 53%를 넘는다고 합니다. 전체 국민의 반 이상이 종교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국가는 최소한의 지원이나 배려에도 충분하지 못한 종교부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 위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바입니다.

현재 상당 부분의 종교활동은 상가지역이나 지하, 심지어는 유흥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러한 종교부지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한 종교활동을 저해하고 있고 주말이면 주차난과 소음 등으로 계획적인 도시조성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고 특히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에서는 현실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현재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신도시의 경우를 보면 신도시 조성 시 종교용지 확보와 관련된 규정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도시의 종교용지 비율이 극히 미흡한 실정이고 그나마도 신도시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지금까지 신도시 계획에 따른 종교용지 조성면적은 전체 신도시 조성면적 대비 평균 0.4~0.6%에 불과하고 최근 조성되고 있는, 예컨대 송도 신도시 제2공구에서는 0.1% 이하인 형편입니다.

심지어 김포 장기지구에는 27만 평의 아파트를 조성하는데 단 300평의 종교용지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와 같이 과반수의 인구가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 종교용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기는 많은 문제점은 우리의 조속한 해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종교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적정면적의 종교부지가 적당한 환경을 갖추어서 선정되어야 하고 주변시설과도 마찰이 없이 계획되어야 합니다. 적정하게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야말로 종교자유 의 가장 실질적인 보장의 기초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와 현재에 큰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종교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공문화체육시설 중에 종교시설을 명문으로 포함시켜 종교시설에 관한 규정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종교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이 기형적 모습을 벗어나서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형성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동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일현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8항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정장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의원 오늘 이렇게 상정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일현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서남권위원회 정장선 위원입니다.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권등 낙후지역은 그동안 개발과정에서 소외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 및 생활기반이 열악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분야

별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소규모 분산투자 위주의 개별적 접근에 따라 자생적 발전에 한계를 보여 왔습니다.

이러한 낙후지역의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서남권은 현재 지역발전이 가장 취약하나 무안국제공항, 호남고속철도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있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조선산업, 식품산업 등 특성화된 지역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과 가까운 지정학적 여건상 대중국 교역의 거점화에 유리한 점 등 높은 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남권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낙후지역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함으로써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신안군과 그 인접지역은 서남권 종합발전구역으로 법정 지정하고 그 밖에 낙후지역 등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건설부장관이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구역 내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되면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산업단지 지정, 관광단지 지정, 유통단지 지정 등을 의제하여 개발사업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셋째,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산업 및 입주기업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낙후지역의 발전과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낙후지역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낙후지역발전기획단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법인 설립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출자제한을 완화하고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은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며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문화·관광시설 등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우선 지정, 부지매입비 용자, 국공유지 임대와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하여 기업 유치를 촉진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그동안 다양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서남권의 현실을 감안하시고, 나아가 성장잠재력이 있는 그 밖의 낙후지역 발전과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를 살피셔서 동 법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소개의원을 대표해서 김영춘 위원께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춘 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 광진갑구 출신 김영춘 의원입니다.

중랑천변 군자교 인근에 위치한 서울 광진구 중곡동은 지대가 낮아서 여름철 우기가 되면 언론의 집중취재 대상이 될 정도로 과거 수차례의 큰 침수피해를 당한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건축법 제54조에 의한 재해관리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1의6항에 따른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통해 항구적인 침수방지대책을 세우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인근 중랑구의 중랑천변 지역에서도 동일 유형의 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존경하는 김덕규 의원님으로부터도 유사한 청원이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러한 재해관리구역으로의 지정을 추진하던 중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2005년 12월 7일 제정 공포되었고 2006년 6월 8일 시행을 앞



두고 건설교통부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었습니다.

당시 입법예고안에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제정과 연관된 관련 법규 개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인 재해관리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한 방재지구로 변경한다고 하였으나 법 시행일이 가까워져 오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최종 변경되었고, 종전에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하여 신청을 했거나 신규로 재해관리구역을 지정할 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습 침수피해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수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청원 소개 이후 건설교통부에서도 종전 재해관리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에 모쪼록 건교위원회에서 이 청원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또 정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신안산선 대립삼거리역사 유치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소개의원인신전병현 의원께서 나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취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제15항·제20항·제39항,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건설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존경하는 조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부과한 사례가 없고 향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제도의 존치실익이 없는 수익자부담금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취소사유를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유권에 대한 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의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유사실확인서 발급제도가 사업시행자의 불안정한 토지소유권 확보 및 피보상자의 탈세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토지보상 자금으로 인한 인근 부동산가격의 상승 유발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재정차과 개발 혜택을 공유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토보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잔여토지 보상과 같이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잔여 건축물의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토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국제적인 항공안전의 강화추세에 맞추어 항공안전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항공기정비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항공기의 정비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항공기정비업을 항공기취급업에서 분리하여 독자적 업역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항공기·장비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안전기술기준의 적합 여부를 사전 심사·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

항공기 등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항공안전프로그램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이에 따라 자체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운영토록 하여 국가적 차원의 항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EU 등과의 항공 협력 확대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국제법상 인정되는 지역협력 블록을 국내법에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4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일현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제14항, 제18항~제37항, 제40항~제64항 이상 42건의 법률안과 16건의 청원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요약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하고 엄호성 의원, 유필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과 엄호성 의원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필우 의원안은 07년 4월 하천법의 개정으로 하천수의 용도에 환경개선용수와 주운이 추가됨에 따라 댐의 용도에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용수 사용과 관련된 갈등 해소와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노영민 의원, 이미경 의원, 권오을 의원, 심재철 의원, 이낙연 의원, 한선교 의원, 주승용 의원, 이종걸 의원, 안명옥 의원, 박상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의원안은 온돌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하여 온돌 및 난방설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낙연 의원안은 건축물의 사용승인검사, 건축허가 취소사유 등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는 법안으로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승용 의원안입니다.

공개공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의 설치·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서 공개공지제도의 왜곡 운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나머지 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돈 의원, 허태열 의원, 이재창 의원, 김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창 의원안은 손실 보상의 방법으로 현금 또는 채권 외에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라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사업 편입 공장에 대해서도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토록 하는 것으로서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공장 소유자의 지속적인 기업활동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계안 의원, 서재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재관 의원안은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내 개발행위제한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로 앞당기고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법률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인 바, 2027년까지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동한 시법의 시한 연장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홍문표 의원, 우윤근 의원, 김애실 의원, 심재철 의원, 정희수 의원, 김춘진 의원, 최재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선병렬 의원, 문학진 의원, 한병도 의원, 안민석 의원, 허태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보고서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장선 의원, 허태열 의원, 황우여 의원, 최재성 의원, 이경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장선 의원안은 이행강제금 체납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황우여 의원안은 종교시설을 기반시설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종교시설을 도로·수도 등 일반 시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최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업시행자 등으로 하여금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들에 대해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서 예정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수입원 제공 등 실질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장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서남권을 포함한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광역적 단위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통해 개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적·제도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연안권발전특별법안과 비교해 볼 때 적용범위, 개발계획승인 시 의제사항, 토지수용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고 연안권 법안에 없는 조세감면특례, 지방채 추가 발행, 금융기관 출자 제한 완화, 기업결합신고 의제 등 특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도 중앙선·경춘선 소음방지를 위한 망우역 일대 터널화에 관한 청원 등 16건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같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5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제17항, 제38항 및 제39항 이상 5건 법률안에 대해서 이율복 전문위원 요약 검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복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두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두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서가 있는 경우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 이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승인권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실시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동 법 개정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감독권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감독권행사의 대상, 요건 및 효과를 구체화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행정권한이 자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주성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속철도 역세권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 개정안은 항공 운송의 여객수송분담률이 일정 규모 이상인 지역의 국내 항공노선에 대한 여객의 요금·운임 인가제 도입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특정 국내 항공노선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인가제 도입문제는 항공자유화 추세 그리고 다른 노선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동 법 개정안은 항공기 정비업

의 신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항공기 등의 수출감항승인제도 도입,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수립·운용 등을 통하여 국가적 차원의 항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항공안전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강화하려는 내용으로서 항공안전에 관한 국제기준 변경사항을 국내법 체계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범위 확대문제는 국익과 항공산업 발전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일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빠지셨는데 2시 반에 개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질의는?

오전에 의사일정이 추가되면서 제안설명 하실 위원님들에게 많은 기다림을 드렸고 또 몇 분은 가시게 해서 서면으로 대신 제출하게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미안한 말씀을 드리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해서 이 법안과 청원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법안과 오늘 상정된 청원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 순서에 의해서 이영순 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공히 7분씩으로 정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 위원 먼저 어제 공청회가 있었던 토·주공 법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찬성 반대 입장이 있기는 했었지만 현행의 입장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행 양대 거대한 공사 체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 현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진술인은 안 계셨던 것 같은데 다만 시기나 내용 문제를 지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 측 입장은

반대 입장이시지요, 이 법안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반대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이 문제는 이미 16대 국회 말에도 한번 얘기가 되다가 분리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결론이 내려졌고, 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나름대로 각각의 사업에 특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마지막에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물량을 효율적으로 빨리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문제가 논의되면 주택공급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영순 위원 금년에 거론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분리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금년에 처리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하면 이후에는 통합 논의가 돼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현 체계로 가는 게 맞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런데 현 체계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 입장은 또 업무 중복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사가 과도하게 민간의 역할까지도 침해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 중복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 논의를 불러 온, 촉발시킨 원인은 정부 측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게끔 운영이 되어 왔고, 거기다가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에 토지공사를 개입시켜서 이 논의를 더 촉발시킨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통합되어야 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업무 중복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세워서 논의를 계속 지속시키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래서 이제……

○이영순 위원 이 법안에서 반대를 한다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일부 조그마한 부분의 중복은 있지만 큰 틀에서 주택공사는 주택 등의 건설 그리고 토지공사는 택지 마련에 특화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중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부 중복이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장관님을 답변을 들으면서 이렇게 “일부 중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인식하는 한 업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통합 논의를 어떻게든지 매듭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어봤자 똑같은 논의가, 똑같은 공론화가 계속 될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고 겸허하고 솔직하게 사태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다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3조에 보면 현금 보상에 대해서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에 의해서 양도한 자에 한해서 대토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런데 여기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자”로 규정을 했는데 이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자”라고 함은 이의제기한 그런 경우는 제외시킨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우선 정부가 낸 법안은 수용이랄지 그런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대토가 일응은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해서 부채지주가 아닌 사람이랄지 협의에 의해서 양도했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 보상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의제기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한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아예 박탈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또 억울한 사람

이 나타나게 할 수 있으니까 이의제기를 했다 하더라도 대토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3항에 보면 “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 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로 규정했다면 그러면 이전등기를 하고 나면 매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렇지요. 예.

○**이영순 위원** 그러면 매각 가능한 기간에 뭔가 제한규정을 두어야 이런 여러 가지 투기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 거고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구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이영순 위원** 그다음에 40쪽의 부채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 중에서 현금 1억 원 이상의 일정금액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이 금액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은 부채지주나 이런 분들의 투기 등의 요소는 줄여 보자라고 하는 게 제가 제안하는 취지 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추가질의에서 하든지 아니면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현**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경 위원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아까 배석한 수자원공사 고양수협장 앞으로 좀 나오세요.

○**위원장 조일현** 어디에 갔어요? 없어요?

(「찾으러 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늘 오후 2시에, 또 3시에 도착하시기로 하신 김원 씨, 김종원 씨 오셨어요?

○**참고인 김종원** 예, 왔습니다.

○**위원장 조일현** 그러면 안정훈?

○**참고인 안정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조일현** 그러면 오늘 참고로 위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안정훈, 고양수, 김종원, 김원,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네 분이 참고인으로 참석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수 씨는 밖에 있는 거예요?

고양수 씨는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재경 위원님에 대해서 시간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거기 우리가 얹어 놓은 2개의 검토보고서 있지요?

○**참고인 고양수** 예.

○**김재경 위원**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37쪽짜리 보고서 그게 오전에 연통 기사를 보면 경기경찰청에서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만든 것으로 건교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는데 그 37쪽짜리 보고서를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기는 가지고 있어요?

○**참고인 고양수** 보고서 파일을 1세트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에게 유출된 자료 문서를 지난 화요일에 얻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러니까 14페이지, 14페이지, 9페이지 이렇게 3개를 얻었다 이 이야기지요?

○**참고인 고양수**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러니까 다 원본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참고인 고양수** 그래서 그 3개의, 전체 37페이지의 문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과 비교를 해 보니까 37페이지에 부합되는 파일을 저희 공사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되었고요. 그러면 그 파일은 그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참고인 고양수** 건교부로부터 받았습니까.

○**김재경 위원** 누구?

○**참고인 고양수** 장윤호 주사인가요?

○**김재경 위원** 조금 뒤에 가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건교부 서기관 앞으로 나와 보세요.

아까 고양수 팀장 하는 이야기 들었지요?

그 37페이지짜리 보고서 건교부에서 만들었지요?

○**참고인 안정훈** 그것은 중앙일보에 보도된……

○**김재경 위원** 거기에 얹혀 있잖아요, 37페이지 짜리.

보세요, 거기 2개 갖다 놓았어요. 9페이지짜리 하고 갖다 놓았어요.

○**참고인 안정훈** 예, 이것은 9페이지짜리이고……

○**김재경 위원** 37페이지짜리 그 파일 건교부에서 만든 것 맞지요?

○**참고인 안정훈** 이것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생각하는데요. 정확한 것은 저희가……

○**김재경 위원** 건교부에서 파일 받았다는 이야기를 금방 듣고도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참고인 안정훈** 글썽 고양수 팀장이 파일을 받았다는 파일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아서……

○**참고인 고양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김재경 위원** 예.

○**참고인 고양수** 제가 그제 건교부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파일이 아니라 유출된 그 문서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김재경 위원** 문서를 받았어요?

○**참고인 고양수**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이 37쪽짜리를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고인 고양수** 예, 이것을 팩스로 보내 드렸는데 그것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건교부의 자료가 아니라 유출된 것을 “이런 것이 유출되었는데 너희들 가지고 있느냐?”하고 수자원공사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을.

거기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37쪽짜리 보고서는 만든 적 없습니까?

○**참고인 안정훈** 예, 만든 적 없습니다.

○**김재경 위원** 확실히 이야기해요.

○**참고인 안정훈** 예, 확실하게 없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러면 9페이지짜리만 만든 것입니까?

○**참고인 안정훈** 예, 9페이지짜리는 만들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 9페이지짜리 중에서 37페이지짜리의 핵심되는 9페이지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은 인정하지요?

○**참고인 안정훈** 이 내용은 저희 장관님도 말씀드렸다시피 T/F에서 논의되는 내용들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재경 위원** 유사한 내용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장관이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서이고 내용이 다르고 조작됐다라고 얘기할 때 왜 뒤에 앉아 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참고인 안정훈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게 서로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러니까 37페이지짜리 중에서 9페이지짜리 보고서가 거의 그대로 옮겨진 부분이 있잖아요?

○참고인 안정훈 예, 앞쪽에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거의 유사한데, 그것이 조작됐다라고 장관이 인정하고 자꾸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때 왜 뒤에 앉아서 가만히 있느냐고요? 이미 그런 내용의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 왜 가만히 앉아 있느냐 이 말이야!

○참고인 안정훈 장관님께서 “일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9페이지짜리 말고 37페이지짜리 중에 달려 있는 그 부분은 누가 만든 거예요?

○참고인 안정훈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9페이지짜리 워딩은 누가 만든 거예요?

○참고인 안정훈 9페이지 워딩 작업은 제가 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거기 보면 “국내 정치동향 보고” 이런 게 들어 있던데 그것은 자료를 어디서 받은 겁니까?

○참고인 안정훈 이것은 저희가 수공하고 같이 주로 언론에 공개된 내용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찾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재경 위원 거기에 “열린우리당 동향”이라든지 “MB 측 동향” 이런 것은 인터넷에 나오는 자료가 아닌데……

○참고인 안정훈 대부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VIP께서 저녁 먹으면서 했다는 이야기나 이런 것은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데……

○참고인 안정훈 어떤 부분……

○김재경 위원 VIP가 열린우리당 만찬에 가서……

○참고인 안정훈 열린우리당 지도부 만찬도 나

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러면 “5월 21일 동향” 그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참고인 안정훈 “5월 21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37쪽에 “5월 21일” 들어간 것,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러면 워딩만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내부적으로 누구누구 결재를 받은 거예요?

○참고인 안정훈 이 9페이지짜리 말씀이십니까?

○김재경 위원 예.

○참고인 안정훈 이것은 장관님까지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것은 제가 결재하지도 않았습시다. 그냥 가져와서 보여주고만 가져간 겁니다. 결재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냥 TF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 준 것뿐입니다.

○김재경 위원 “정치권 동향” 이것도 수자원공사에서 자료 받은 것을 정리한 것인가요?

○참고인 안정훈 거의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내용은 대부분 그렇게 언론에 있는 내용들을 작성한 것입니다.

○김재경 위원 어제 우리한테 넘어온 청와대 보고서 9쪽짜리, 그게 5월 9일 보고한 내용 그대로입니까?

○참고인 안정훈 9쪽짜리, 이것은 보고한 그대로입니다.

○김재경 위원 그런데 제출하는 데 시간이 왜 그렇게 오래 걸렸지요?

○참고인 안정훈 저희가 18일에 요구받아 가지고 금방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아니, 저녁 때 왔잖아요. 한참 늦게 왔던데. 그것 빼 가지고 바로 보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늦었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보다도 궁금한 것은 장관이 그날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작된 문서라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을 폄하하는 것입니까라고까지 강도를 높여 가지고 장

관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의 실무자들이 엄연히 그 내용이 들어 있는, “정치권 동향”이라든지 그런 불순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면서 장관이 답하는데 뒤에 앉아 가지고 가만히 있는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장관이 국회에 와 가지고 답을 하는데 그 답이 바로 가는지 거꾸로 가는지 뒤에 실무자들이 다 앉아 있으면서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게 거꾸로 장관 말에 맞춰져 가지고 ‘그것이 조작이 됐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날 ‘우리가 정치적인 오해를 살 만한 소지는 있지만 사실 정치권 동향까지 넣어 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만든 게 맞고 그거에서 숫자만 몇 개 바뀐 겁니다.’ 이렇게 설명이 됐으면 이렇게까지 안 가잖아요.

수자원공사 팀들도 뒤에 와 가지고 우두커니 앉아 있고 실무자들은 문서 만들었다는 사람도 와 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장관이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바로 가는지 거꾸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지금 그게 장관이 있는 거예요? 장관이 없는 것이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일현 예, 들어가시고.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시종 위원께서 토론하겠습니다.

○이시종 위원 법안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권오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중에서 건축물의 배수·배관을 전부 다 불연재로 하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의 의견이 어떤지, 이것을 불연재로 해서 화재 위험을 줄이는 것은 좋은데 건축물 속에 들어가는 배수·배관을 전부 다 불연재로 한다면 이게 코스트가 많이 높아져서 결국 서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갈 것으로 보는데 장관님,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대강 보고를 받았 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 이랄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배수·배관 설비를 불연재로 설치하는 것은 일단 그 취지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시종 위원 물론 취지는 좋은데 이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의무화하면 공사비도 증가돼서 국민 부담이 염려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시종 위원 협동조합에서, 협회 입장에서는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도 잘은 모르지만 건축물 속에 들어가는 관을 전부 다 불연재로 해야 된다고 하는 법은 외국에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물론 화재를 줄인다고 하는 이런 목적에서 참 좋기는 좋은데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우리의 경제발전 속도와 속도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안을 조화하는 차원에서 실내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시종 위원 예.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이런 부분은 화재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시종 위원 법안 심의 때 검토했습니다마는 이상은 좋은데 이상을 모두 다 그대로 따라가려다 보면 우리의 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건축법 중에서 온돌·난방 설비를 시공한 자가 설치명세서를 건축주에게 교부하고 건축주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특별히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없겠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다만 이것을 법률에 규정할 것이냐, 좀 탄력적으로 시행령에 규정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소위 하시면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시종 위원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해서 환급해 주는 것, 그게 전체 83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83억이 전체 액수로 보면 적은데 83억이라고 하는 게 법이 시행되고 다시 또 고쳐지고 그 중간 과정에 어떻게 보면 운이 좀 나빠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걸려든 사람들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환급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런데 그런 면을 보면 합리성 면에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법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하고 실천력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법을 만들면서 과거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해 가지고 새 법을 시행하면서 환급하기 시작하면 법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계속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시종 위원** 물론 소급 적용하는 것이…… 법 논리로 보면 맞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의 애기지요. 실체가 잡히지 않는 그냥 상징적인 법의 애기고 이것은 현실적인 사람의 문제거든요. 법의 논리나 법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 참 좋은데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이 나빠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재수가 좀 없어 가지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83억을 낸 개인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거든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런데 그것도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건축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부가 면제해 줄 필요성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정책상으로 판단해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과거 것이 꼭 잘못 걸렸다 그렇게 표현……

○**이시종 위원** 잘못 걸렸다는 것보다도 그 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안 받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런데 세금도 그렇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개정해서 앞으로 안 받는 게 많은데 그런 것을 다 환급해 주기 시작해서 이게 확산되면 법을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조일현 위원장, 주승용 간사와 사회교대)

○**이시종 위원** 일반 세금하고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히, 종전부터 죽 내 오던 것을 어느 기간부터 안 받는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은 짧은 기간 동안 안 받다가 잠깐 받았다가 다시 또 안 받게 된 거거든요. 과거에도 수십 년 동안 기반시설부담금은 죽 받아 왔었다, 그러다가 법을 개정해서 안 받기로 했다,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안 받다가 잠깐 받았다가 또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특별히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하나,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법이

많이 양산되고 법이 참 많이 늘어나는데, 보면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법이 많이 양산되고 또 소비자의 권익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에 부담을 많이 주는 이런 것이 자꾸 양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참 있다 보면 법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 법이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보다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결국 국민들에게, 기업에게 부담을 많이 갖다 준다 이런 게 지금 많이 있거든요.

저는 평소에 지금 우리나라가 법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진짜 과감하게 법 없애기 운동을 벌여야 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아까도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 지역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혜를 주는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물론 건교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자칫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이름으로 규제가 양산되거나 규제를 중복시키거나 부처 이기주의를 조장하거나 특정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불공평, 균형 발전에 저해 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각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일반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유념해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승용** 이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 이진구 위원입니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이 전체 보상금의 20%가량이 개발된 땅으로 보상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의 근거가 됩니까?

○**건설교통부주거복지본부토지기획관 박상우** 토지기획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토보상제 도입을 정부 법안을 만들면서 토지공사가 시행한 용인 흥덕지구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정부안으로 나와 있는 규정을 적용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가 대토보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한

18%~20%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시한 숫자입니다.

○**이진구 위원** 수익성이 높은 개발된 땅으로 보상하게 되면 로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개발지역 부동산값을 올려 악순환을 반복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무엇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살고 있던 분들이 현지에 정착하도록 하는 게, 또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수용당하거나 협의매수당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에 계신 분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게 좋은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대토보상을 하면, 현금보상에 따라 현금이 많이 풀리게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 감안한 겁니다.

○**이진구 위원** 보상면적이 주택용지는 330㎡, 상업용지는 1100㎡를 초과할 수 없어 역시 고액보상자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전국 신도시 토지보상금 수령자 가운데 약 10억 이상의 고액 보상금 수령자가 13.9%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셨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직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액자라 해서 대지나 상가를 너무 많이 대토해 주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또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사업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대토를 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진구 위원** 항공법안 제150조제1항제18호, 이것은 지난번 프랑스와의 항공협정이 국내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개정하신 거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바로 상충까지는 안 되지만 보완하는 게 완벽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진구 위원** 일 처리 선후가 바뀐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런데 현재 법에 보면 재량행위로 되어 있지만 혹시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완벽하게 보완해 놓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구 위원** 주성영 의원의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보면 고속철도가 광역교통의 핵심으로 역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에 대한 개발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형편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다만 주성영 의원님께서 한 역세권 개발 지원은 그 취지는 좋은데, 다만 현재 철도건설법에서 이미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철도건설법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이렇게 중복해서 법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진구 위원** 혁신도시특별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사업 토지보상법에는 주민에 대한 직업 전환 훈련이나 지역주민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지원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처럼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곳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동등한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처를 어떤 요량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여튼 다른 지역에 있어서도 불이익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구 위원** 자칫하면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수준의 지원이 전국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좀 소상하게 얘기해 보세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는 어떤 특정 지역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보상해 주자는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또 너무 과도하게 보상했을 때 다른 분들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개발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데 특정 지역과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세워서 잘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 위원** 정부가 행복도시나 혁신도시를 너무 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속도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부작용은 최소화되면서 그런 균형 발전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승용**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형 위원님!

○**홍재형 위원** 강창일 위원님, 바쁘시면 먼저 하세요.

○**위원장대리 주승용** 강창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창일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강창일 위원** 장관님은 머리가 아프실 테고 항공정책국장님 와 계세요?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항공기획관입니다.

○**강창일 위원** 제가 항공법 개정안 제출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고했습니다. 건교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항공사들하고 잘해서 그래도 7, 8월에 약간 숨통이 트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예, 내일 제가 양 항공사 부사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일단 7, 8월에 특별기 띄우면서 하는데 이게 미봉책이고 임시방편적인 것이거든요. 구조적,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대화하고 싶은데 자유화 자유화 얘기하는데 말이지요, 자유화라는 것이 지고의 가치 아닙니다. 그것을 지고의 가치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지요?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예.

○**강창일 위원** 그러면 국가나 사회가 있을 필요나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제멋대로 하는 방종이 되어 버리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책임과 의무와 질서를 전제로 하면서, 공적 사익성을 전제로 하면서 자유가 얘기될 때

자유화는 의미를 갖고 가치를 갖게 되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항공 자유화의 원칙과 항공법 개정은 부합되지 않는다는 그런 식의 논리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가 지금 여객 수송 분담률이 몇 %인지 알고 계시지요?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 분담률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1일 생활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제주도를 생각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이라는 말이 아니라 필수교통수단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예.

○**강창일 위원** 대중이 아니라 필수…… 그러면 이것은 국가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공공성, 공익성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얘가지요. 부산이나 광주나 여수, 여기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급할 때는 기차로도 가고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는데 제주도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가지요. 안 그래도 섬에서 태어나 섬에서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식으로 법과 제도를 가지고 더 서럽게 하면 제주도 사람들이 제주도에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한다고요.

다음에 국제자유도시를 하는데 기본적인 기간이 안 되어 있는데,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자유도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고민을 좀 해 보고요.

제주도 사람들은 요즘 화가 나는 게 항공사의 횡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희들 비행기 안 타면 물으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탑승료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해서 더 울분이 터지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전 세계 항공, 한국에서 노선 탑승률을 봤더니 제주도가 제일 높더군요. 미국 중국 다 합쳐서 최고로 높더라고요.

또 양대 항공사는 어찌고저찌고 할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주도는 황금 노선이거든요. 탑승률 80% 이상이면 황금 노선이지요. 수익금도 나고요. 그런데 편수를 계속 줄여. 그게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사이에 이것저것 검토하니까 좀

이해는 됩니다. 외국의 항공노선, 또 비행기도 없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또 수요자 입장에서 형평성 문제도 고민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래서 지금 부산, 광주 같은 데 탑승률이 70%입니다. 제주도는 80%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75%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비행기가 없다 하면? 그것 하나 빼서 제주도로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비행기 없다, 없다 하지 말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제도적으로 이것 어떻게, 섬이니까 버린다는 기분으로 하지 마시고 제주도가 참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땅이다 생각을 해서 그 문제를 푸는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도진흥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항공노선 유지를 위해서 종합지원 시스템 같은 것도 있고 말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예.

○강창일 위원 일본 오키나와 갈 때 많이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다음에 어느 정도 국가 규제도 하지요. 또 미국은 봤더니 EAS(필수항공서비스) 제도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 등등을 참작하면서 좀 제발 같이 고민합시다.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주 만나면서 같이 논의하자고요. 이 법 문제도 그렇고요.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예, 알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래서 자율성을 침해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사업개선명령제를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잖아요?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예, 없습니다.

○강창일 위원 지금 항공법 제122조인가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지요?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예.

○강창일 위원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데도. 그런데 또 제122조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얘가지요. 제 얘기는 이런 식으로 필수교통수단인 경우에는 건교부가 규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소위 신

고제가 아니라 인가제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나는 그것은 조금 더 자유스러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아마 제 입장이 논리적으로 좀 맞는 것 같아요, 필수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요?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예, 요금 인가제는……

○강창일 위원 요금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금 문제는 수익성도 보장되어야 되고 또 시장원리에 맡겨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 문제도 어느 정도 선에서 규제는 해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요.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예, 탑승률이 높은 경우에는 사업 제도, 개선명령권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법적인, 이게 아주 시혜적인 차원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자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예, 알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승용 제주도의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위원 법안하고 청원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대운하 관련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셨는데, 그것이 보도된 지가 꽤 오래됐고 또 출처가 건교부라는 건 초기부터 이미 감지하셨을 텐데 내부적으로 완전 백지 상태에서 경찰에 넘기셨습니까, 어느 정도 내부적인 조사가 있고 경찰에 넘기셨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보도가 된 건 6월 4일이니까 시간이 꽤 흘렀지만 이번에 경찰에 고발한 것은 37쪽이 어디서 유출됐느냐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제가 지난 월요일인 6월 18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19일부터 우리 감사관실과 또 해당 실무팀을 통해서 이 자금 출처를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의뢰할 때는 그냥 서류상으로만 의뢰했고, 어제 일부 자료는 아마 감사관실에서 파악한 내용을 경찰에 협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낙연 위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존경하는 홍재형 위원님이 보시는 대로 문건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는 분도 계실 거고, 또는 누가 왜 만들었는가가 중요하다고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장관님이나 우리 건교위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게 밖으로 나갔는가, 누가 내보냈는가,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고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추론컨대는 완전 백지에서 경찰에 넘겼을까, 아니면 어느 정도 알고 자신이 있으니까 경찰에 넘겼을까 하는 식의 상상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의 질의입니다. 백지에서 넘겼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저는 유·불리를 떠나서 공정선거 분위기를 정립시키고, 정부가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 스스로는 그게 확고하지만 또 국민들이 신뢰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가 경찰에 넘기는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경찰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낙연 위원** 그러시고, 다른 유력 예비후보는 페리를 제안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사업성이나 경제성을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런데 이것을 한 가지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대운하도 우리가 공약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약사항은 한반도 대운하였고 저희가 검토한 것은 벌써 10여 년 전의 용역 결과가 있었던 경부운하, 그 사항에 대해서 현실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고, 여하튼 저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있지요. 특정 공약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게 나갔을 때 미치는 과장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공약사항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우리 국민경제나 국민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는 건교부가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니다.

다만 아주 조그마한 개별 공약들에까지 정부가 하기에는 공정선거에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고 또 정부가 급하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낙연 위원** 이번 문제,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의 찬반 논의가 있습니다만 그중에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후보의 너무나 중요한 공약,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많은 국민들이 그것의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이런 것을 정부가 연구하는 게 뭐가 나쁘냐 하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위원** 그렇다면 다른 유력 후보의 동북아 페리든가요, 하는 것은 그만한 사안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동북아 페리 문제는 누가 이렇게 공약으로 내걸어서 검토하고 안 하기보다는, 그것은 물류를 하는 사람이면 아이디어의 하나로 누구나 다 생각을 해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디다만, 그 부분은 제가 특정의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본 후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위원** 알겠습니다.

경부운하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 가운데는 그 대안으로서 화물전용 고속도로를 만들면 값도 훨씬 더 싸게 먹히고 시간도 더 절약될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산하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안 했을 겁니다만 장관님, 감각적으로는 어떠세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경부대운하 전문가들이 TF에서 검토할 때, 무슨 B/C가 얼마다 이런 것을 계산할 때는 다른 대체 운송수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런 것이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수출하는 상품이나 이런 게 톤 상품이었습니다. 부피도 크고 무겁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램 상품

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부피도 적고 무게도 가볍고, 전에는 부피는 크면서 가격은 싸고 지금은 부피나 무게는 적으면서 가격은 컴퓨터 칩처럼 매우 비싼……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게 스피드입니다. 속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감안돼서 운송수단도 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낙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승용 이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형 위원 이용섭 장관 이하 건교부 고위간부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항공법 관계 좀 하겠는데요. 건교부가 보고할 때 제가 항공 국제선 관계, 저가항공을 지원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저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그랬고 내내 저가항공을 좀 지원해서, 지방공항에서 국제선 저가항공을 띄워서 지방공항도 살리고 또 우리나라 항공시장이 자꾸 외국 항공사로부터 침식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호해야 된다, 또 이 저가항공사를 보면 대개 연료비가 한 30%면 된다고 그러고 또 가격 경쟁력에서도 한 80% 선이 되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있다……

특히 중국의 동방항공이나 남방항공이 청주공항에도 지금 자주 들어오는데,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하려면 우리나라 저가 항공도 규제를 좀 풀어 줘야 같이 경쟁을 하는데, 지금 중국은 아무 규제도 안 하는데 한국은 예를 들면 한 3년간 띄워보고 한다든지, 국제 규격은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칼이나 아시아나 같은 큰 회사들로부터 로비를 받아 가지고 건교부가 양극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지금 국제적인 추세로 저가 항공사가 동남아에서는 몇 배씩 뜨고 있는데 한국 공기업은 그런 국제 감각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지, 아니면 기존 항공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지 똑같은 국제 규격, 다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하는 건데도 이것을 제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번에 내부지침을 만든다고 했는데 건교부

에서, 이것을 자꾸 규정으로 만든다, 규정도 없이 규제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법으로 넣어서 저가 항공사를 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정일영 기획관, 이것 어디다 넣으면 돼요, 몇 조에다 넣으면 돼?

강창일 위원은 제주항공에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제주항공도 아마 비행기는 들여오고 국제선을 뜨게 하고 싶은데 건교부에서 못 뜨게 해 가지고 지금 못 뜨고 있을 텐데 법을 어디를 고치면 되겠어요?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항공기획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가 항공사 활성화 대책을 저희가 용역 중에 있는데 이번 항공법 개정에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포함을 못 하고 다음 항공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현재 저가 항공사 면허 기준도 좀 낮추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우선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항공법 개정안을……

○홍재형 위원 그 연구가 언제 끝나요?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올 11월 경에 끝납니다.

○홍재형 위원 그러면 이번 국회에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예, 이번에는 조금 어렵고요.

○홍재형 위원 아니, 저가 항공은 지금 국제적으로 매년 몇 배씩 늘고 있어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그래서 그 면허 기준 같은 것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연구를 해서 다음 항공법 개정엔 넣지만 법 개정에 관계가 없는 사항은 저희가 계속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저가 항공사들은……

○홍재형 위원 글썄, 말은 한다고 그러는데 실지로 안 하고 있으니까, 국제가 광속으로 바뀌고 있는데 건교부의 항공행정은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도 못 미쳐 가지고……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홍재형 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언제 용역을 맡겼어요?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연구는 저희가 3월부터 했고 용역은 5월에 시작했

습니다.

○**홍재형 위원** 연구했으면 연구 결과나 용역 결과나 비슷할 텐데 그것을 또다시 용역을 맡겨서 시간만 질질 끌고 또 내년으로 넘기고……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대신 저가 항공사들의 국제선 취항 문제는 별도의 문제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안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홍재형 위원** 글썄,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국제 안전 기준에 맞춰서 그것대로 하라 그런 얘기에요. 그것을 국제기준대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일본이나 중국은 규제를 안 하는데 한국만 안전이라고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다른 나라들도 저가 항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대개 3년 정도 국내선 취항을 해 가지고 안전이나 운항 스케줄, 지연, 연착 이런 것에 문제가 없을 때 국제선 허용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지금 제주에어 같은 것이 1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한성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 국내선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한 2, 3년 동안 운항을 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다고 보면 국제선 단거리, 예를 들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500km 이내부터 허용을 하는 것으로……

○**홍재형 위원** 3년 안전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국제기준이 필요 없이 그냥 허가해 줘요?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아닙니다. 운항 사고기준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정하여 놓으려고 그러합니다.

○**홍재형 위원** 안전기준은, 누가 그것을 내놓는 겁니까?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물론 ICAO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겁니다.

○**홍재형 위원** 그것 기준에 맞으면 되지 자꾸 그렇게 규제를 많이 해요?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그런데 지금 한성항공이나 제주에어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보다 사고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높습니다.

○**홍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풀어 주면 다른 회사들도 또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대형 회사들은 계속하고 외국의 저가 항공사는 들어오고 국내 시장은 잠식당하고, 그러

면 누가 손해예요?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외국의 저가 항공사들도 안전 운행에 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홍재형 위원** 글썄, 같은 기준으로 하라 그런 얘기에요. 하고, 그것을 풀어 줘라 그런 얘기에요.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하여튼 저희가 현재 기준을 만들고 있고 그것을 투명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형 위원** 투명하게 발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후년에 발표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아닙니다. 그 기준은 연내에 발표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성항공이나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제주항공 같은 경우 벌써 동체 접촉 사고가 작년 7월에 있었고요, 바퀴 이탈 사고가 금년 2월에 있었고, 2일 이상 정비를 요하는 고장이 12건이나 있었습니다. 수리기간이 80일이나 걸렸고요.

○**홍재형 위원** 사람이 많이 상했어요?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인명사고가 크게 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두 항공사 다 상당히 위험한 사고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홍재형 위원** 시간이 지났는데, 그쪽에서 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없어요?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현재 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홍재형 위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법적으로도 조치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 것 같은데……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신문지상에서는 저도 봤습니다마는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홍재형 위원** 겁이 나서 아직 건교부에는 얘기를 못 하고 신문사에만 얘기한 모양이구나. 하여간 건교부에서 저가 항공 국제선 띄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 추세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자꾸 용역 주고 계획 세우고 그래 가지고 시간을 다 보내지 마시고요.

○**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항공기획관 정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승용** 홍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강길부 위원 강길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상정을 한 법안은 아니지만 지난 4월 국회 때 상정되었던 건축기본법안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선진 각국이 건축 디자인에 깊은 관심을 갖고, 디자인이 도시 경쟁력이고, 이미지와 관계되고 또 경제 활성화 수단이라는 인식하에서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축사헌장 제1조는 '건축사는 조형창작 예술인으로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우리 아파트를 설계해 온 건축사들이 정작 우리 성냥갑 아파트를 두고 흉물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참으로 참담한 기분입니다.

얼마 전에 책 소개가 되었습니다마는 발레리 줄레조라는 프랑스 지리학자가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도입된 당시의 설계에서 기본 관념이 별로 발전하지 못했고, 또 2003년 기준에서 아파트 한 호당 설계비가 6만 4000원에 불과하다는 이런 지적을 한 것을 저는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장관님께도 질의를 하고 또 그 일환으로서 제도적 실현을 위해서 건축기본법이 발의가 됐었는데 지난 4월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할 때 건축문화진흥법안이—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인데—문화관광위에 제출되어 있어서 양 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다 해서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 부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신경을 쓰고 있을 줄 압니다. 어떻게 현재 협의해서 조정이 되어 가고 있는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우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한테 조언을 해주셨는데도 양 부처 간에 큰 성과가 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실은 한 두 달여 동안 우리 부 차관하고 저쪽 차관 또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신 황우여 의원, 그쪽하고도 또 협의를 하고, 그래서 정부조직법상 건축문화 진흥 관련 업무는 건교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론을 못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정부조직법의 대통령령이라 할 수 있는,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따르면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 발전은 건설교통부의 소관 업무로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고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문화적 공간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부의 소관 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관련 소관 부처가 건설교통부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4월에 지적되었던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전부 수정 보완이 되었고, 현재 부처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면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런데 이것은 또 양 부처 간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신 황 의원님, 이쪽의 양해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건교부가 별로 노력을 한 게 없어요. 내가 황우여 의원하고도 접촉을 해 보니까 황우여 의원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강길부 위원 그리고 그분도 문화관광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함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알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업무 소관을, 건축기준에 관한 것은 누가 하는데요? 너무나 명약관화한 내용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강길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건교부에서의 건축행정이 이런 태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 소관 업무를 자기가 안 챙기고 자기가 발전을 안 시키니까 문광부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교부가 잘하고 있고 건축문화 진흥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이런 관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앞으로 분발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래서 비단 아파트나 빌딩, 공공 건축물뿐만 아니고 교량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디자인하고 미관 증진에 관해서는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해 주든지, 안 그러면 설계경기 이런 제도를 도입하든지 무슨 구체적인 실시 수단을 강구해야지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뭐, 경관법이 통과됐으니까 잘 될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법이 없어서 이것 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관심을 갖고서, 디자인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최고책임자나 CEO급에 있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바로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구체적 수단을, 그러니까 똑같은 건물을 못 짓도록 무슨 규정을 강구한다든지 지시를 한다든지 또는 미관 증진을 어떤 항목을 내 가지고 낙찰할 때, 입찰을 볼 때 가점을 준다든지, 얼마든지 하면 좋아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강길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은 별로…… 형식적으로 말씀만 하시지 장관님하고 문화관광부장관하고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 토론을 해 봤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제가 특히 이게 실무적인 협의가 우선 중요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 전화받고 차관으로 하여금 저쪽 차관하고 바로 협조를 해 보라, 그래서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잘 협의가 안 됐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길부 위원** 전화 한 통화 하고 그냥 해 버리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길부 위원** 내가 주택국장 할 당시에 문화관광부차관이 제 친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언제입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연구한 거예요. 그러나 건교부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큼니까. 건축 담당하는 공

무원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반성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강길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승용** 강길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천 위원**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허천 위원** 좋은 얘기로 장시간을 끌어도 피곤할 텐데 답답한 심정으로 계속 같은 답을 하고 같은 질의를 해서 매우 피곤하실 줄 압니다.

역시 저는 한반도 대운하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교부가 주도로 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하고 또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를 보고서 건설교통부 주무 부처의 일상적인 업무라고 장관께서는 강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시고 또 같은 답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허천 위원** 그러시지요.

지난 5월 9일 9쪽짜리 보고서가 청와대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뒤로 6월 2일 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파장을 일으켰지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투자하겠느냐”, 대통령에 관한 말씀을 장관께 평가를 하라 하면 그것은 좀 제가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마는 야당 예비후보를 의도적으로 비난했다고 보는데, 장관 마음속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를 읽어 보면 말이지요, 보고서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솔직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니까? 저번에 정치적으로 이용을 말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 보고서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만들고 뒷받침했다는 데 대해서는 양심적인 대답이 필요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서류상에는 ‘대외주의’라고 썼습니다, 대외주의. 그렇다면 대외적으로 이게 공표가 되지 말아야 하는 서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 대통령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공표를 하시고 물의를 일으켜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 똑

같이 가지고 계세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우선 6월 4일 기사화되면서 사회적 쟁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허천 위원** 예.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런데 기사화된 37쪽 자료는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이제 그게 TF에서 유출이 안 되고 잘 관리되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또 경찰에 저희가 수사를 의뢰해 냈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5월 7일 제가 보고받고 5월 9일 청와대에 보고한 그 보고서만으로는 37쪽을 작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 TF팀이, 지금 TF에서 검토돼 가는 과정을 중간단계에서 지나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유출돼서 문제가 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또 문제지요. 그렇지 만……

○**허천 위원** 지금 보고 자체나 또 연구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디까지나 이것은 외부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고 대통령께 보고가 됐고 대통령이 참작을 하실 수 있었으면 다행이겠는데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지 않아야 할 문서를 가지고 대통령께서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대외주의라는 공신력을 깨뜨리고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아무리 강변을 하셔도 지금 장관께서 의도하셨던, 그 목적하셨던 바의 보고서가 아니고 그 보고서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켰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이 보고서를 인용하셔 가지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지금 37쪽 얘기 나오셨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를 압수 수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허천 위원** 거기서 지금 경찰이, 유출된 경부 운하 관련 37쪽 보고서가 수자원공사에서 작성된 단서를 포착했다고 지금 YTN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러자면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겠고 법원이 판결을 내

려야 되는데, 그 앞서서 현 단계로서는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아마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또 담당 기관인 선관위에서 판단을 해 주시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 말씀의 뜻도 제가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계속해서 대운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국민 누구나, 또 안 그러면 저부터도 우리 직원들에게, 담당 부서에 ‘운하가 되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아, 이것은 잘못 검토하면 의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손 안 대는 게 낫습니다’, 이게 투자금액이 15조가 넘고 완전히 사회적 의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의혹을 받을까 해 가지고…… 또 어차피 이게 나중에 시행이 된다면 건설교통부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건설교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부서가 이것을 검토 않는다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허천 위원** 검토 자체를 지금 제가 뭐라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검토 자체를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검토 자체를 인정하면서 내부 문건으로 해서 보고가 되었고 참작을 하고 그래서 심도 있게, 조심성 있게 이것이 어느 단계에 사용이 되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현재 후보로서 등장이 되어 가지고 그 후보가 그것을 가장 큰 공약으로 내세워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겨냥해 가지고서……

그나마 언제입니까, 2005년 12월에 수공에 98년부터 타당성 조사한 것 현시점에 맞게 제출하라 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안 하다가 금년에 와서야 1월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1월부터 거의 대선 후보, 특정 후보가 이 운하에 대한 공약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슈가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여론화되고 있으니, 그 무렵에 거기다 불을 끄고 물을 끼얹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2005년 12월에 건설교통부에서 공문이 나갔고……

○**허천 위원** 예, 나갔어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수자원공사에서 그 후

에 안 한 것이 아니고……

○**허천 위원** 여러 가지 일이, 여러 가지 본연의 임무로……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작년 초부터 제가 듣기로는 수자원공사가 국토연구원하고 다른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 왔던 것을 금년에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지요.

○**허천 위원** 그러면 요새는 일거리가 없어서 이것을 만들었어?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래서 TF를 만든 것이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를 하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진척이 안 되니까 이렇게 그 업무만 하는 TF를 만들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뜻입니다.

○**허천 위원**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주승용** 예.

○**허천 위원** 저도 시간 잘 초과 안 하는 사람인데 워낙 양이 많아 가지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수자원공사 사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경부운하와 한반도 대운하가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내용이 다른데 이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한반도 대운하 타당성을 논의한다는 것이 적법하다고 봅니까?

건설교통부장관으로서 이게 건강부회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적절히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허천 위원** 건강부회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자체로 검토하고 보안이 유지되어서 했다면 괜찮다, 그런데 이게 유출이 되어 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게 누가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유출을 시켰다면 그것은 문제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고요.

○**허천 위원**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허천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다면 이 대운하 프로젝트가 대통령이 된 사람의 어떤 공약도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의, 특정인의, 특정 후보의 공약인데 만약에 여당 후보였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지요? 야당 후보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당연히 하지요.

○**허천 위원** 아니지요, 야당 후보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아닙니다.

○**허천 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 이보다 더 큰 것이 나올 때 전부 하겠다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를 했다 해서 무조건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이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서 국민적 알 권리와 관계가 되고 또 그게 현실적으로 사업화되었을 때 국민경제나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허천 위원** 시간이, 제가 1분 달라고 그랬으니까 1분 동안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바랍니다. 중립의 위치에 서 있는 정부가, 이런 선거에 개입하는 인상을 주지 않는 그런 건교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제 스스로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허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승용** 허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우 위원** 우리 장관님 수고 많으시네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유필우 위원** 좀 다른 것으로……

7월 1일부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평균 4.6% 인상된다고 오늘 아침 보도가 있던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지금 상당히 비싸다고 하고 있는데 인상이 또 됐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당초에 어떤 민자사업의 수요 예측과의 차이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 주고 또 30년 동안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서 3배나 비싼 통행요금을 계속 내고, 30년 지나면 통합채산제 원칙에 의해서 유료도로로서 또 통행료를 내고……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민자사업 또 민간 제안사업에 있어서 수요예측 같은 것을 잘해야 된다 하는 측면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왕에 이렇게 된 사업의 경우에 엄청난 통행료를 내면서

정부가 또 재정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인상이 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인상된 만큼의 수입이 있으면 그만큼 정부의 재정 보전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제가 알기로는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우 위원** 그렇다면 정부의 지원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 통행하는 민간인의 부담을 늘려 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협약이 있습니다, 민자 할 때. 협약에 따라서 물가상승률만큼 매년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현재도 높지 않습니까? 높기 때문에 영종도에서 인천 방면으로 가는 것은 이번에 인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유필우 위원** 제가 그쪽 지역 민원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조, 다시 말씀드리어서 정부가 재정지원 보전해 주고 통행료 과다하게 받고 또 민간투자사업에 관리권이 넘어가면 고속도로 요금 또 받고, 이렇게 부담을 무한대로 과다하게 민간에 전가하는 것이 옳느냐 하는 판단을 해 보시라는 것이고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유필우 위원** 두 번째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왔다갔다하는 분들이 대체수단이 없습니다. 다른 교통수단의 대체수단이, 다리가 그것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과다한 통행료라고 하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나는 건교부에서 이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그 다리를 통해서 매일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 줘야 될 텐데 계속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아무런 고려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도로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국가가 기본적으로 도로를 잘 소통될 수 있도록 봐 가지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원활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서 수익자 부담

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 민자유치해서 도로를 낼 때부터 그것은 수익자 부담이 전제가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일정 부분은 재정에서 부담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져서 민자로 갔고 수익자 부담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게 전제가 된 것이거든요.

○**유필우 위원**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렇긴 한다 하더라도 부담이 너무 커지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필우 위원** 부담이 너무 크고 다른 대체수단이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특수한 상황이다, 이렇게 개념을 규정짓고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교부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한 번 더 또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필우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쪽에 다니는 열차, 거기까지 현재 수요예측이 잘못돼서 앞으로 다시 또 계속 연결이 되면 나아지겠지만 현재는 텅텅 비어서 다니거든요.

그러한 수단도 활용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서민들이 하루에 몇 번 오가면서 생긴 것도 감안해 주는 이런 특수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장관님께서 꼭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유필우 위원** 또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시에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서 누차 질의를 한 적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건교부도 고심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그 투자비 몇 배를 더 징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채산이라는 관점에서 계속 해서 징수를 하는 이것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로서의 기능도 못 하면서 돈은 돈대로 계속 받고 거기에 투자된 돈의 거의 3배 이상을 다 회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받는 체제 이것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일면 이해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장관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지시해 주시고 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잘 알겠습니다.

○**유필우 위원**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수도권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 이것이 수정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특수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페이퍼를 주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수도권정비법의 규제를 받는다면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외자유치를 하는 기업들이 이 지역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떠한 기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들어오고 싶다, 또 예를 들어 생물산업실용화센터라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데 이 생물산업실용화센터와 반드시 연계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굴뚝 없는 공장이지요, 이런 것이 들어와 줘야 연계체제 속에서 그게 되는데 수도권 규제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 나는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한 의의가 훨씬 반감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이 부분도 지금 상충되는 정책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외자를 유치하고 또 첨단기술을 들여오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자유구역 도입 취지에 따라서 수정법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겠습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또 어찌됐든 그게 수도권에 있고 수도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분과 똑같은 스테이터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계시고 또 수도권 전체로써 인구집중이나 산업집중을 막자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배제하기도 또 어려운 측면이거든요.

○**유필우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에 토지공사가 청라지구도 하고 그러지만 거의 대부분 아파트가 인구가 과다하게 밀집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비해서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리적 비교우위 이것을 살리는 여러 가지 투자는 못 하고 있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과 또 다른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여러 가지 지원과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왕의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라고 지정은 해놓고 다른 것은 못 들어오면서, 다시 말씀드려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아파트만 들어온다, 있을 수 없는 수도권 규제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모순되는 상황 이것을 장관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유념하겠습니다.

○**유필우 위원** 한번 지시하셔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승용** 유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수 위원** 오후에 늦은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일련의 이슈로 많이 힘드시지요?

오랫동안 공직생활…… 한 30년?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한 삼십삼사 년 된 것 같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정부부처가 경찰청이나 관계 사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까? 나는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이번에 건교부가 이 사건으로……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제가 점점은 안 해 봤지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수 위원** 제 기억에는 잘 없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건교부의 위상이 지난번에 부동산정책 때문에 왔다갔다하면서 또 재정부에 위상이 좀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또 이번에 경찰청에 수사의뢰까지 해서, 외부에서 들어보니까 “건교부에 참 훌륭하신 장관께서 오셨는데 참 말이 아니다”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제가 건교위원으로서 좀 답답한 것을 느낍니다.

그 내용은, 사실 생각이야 옳았다손 치더라도 대선이 가까워 왔을 때 이렇게 정부기관에서 그것을 검증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일단 검토하면 그게 보안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과거 정부에도 그것 알고 있었지만 미묘한 시기 때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게 현명한 처신이 아닌가 싶었는데 장관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우선 건교부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저희가 의뢰해서 한 거였고요, 저는 그것은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좀 체면이 구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수 위원 아, 그것은 아니에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시대가 바뀌었고,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예, 간단하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계속 변화하고 혁신해야 조직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면 이제 털고 가야지 우리 거라 해서 계속 그걸 지키려고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희수 위원 예, 법과 원칙이 서야 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두 번째 그것은, 그런데 이게……

○정희수 위원 주요 공약,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할는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을…… 공약이지 않습니까?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 공약을……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제가 와서 시킨 것도 아니고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2005년 12월……

○정희수 위원 만약에 전임 장관이 시켜서, 추 장관이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기가 아니다. 이것 다시 덮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철학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 있겠으나, 또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희수 위원 아니, 그것은 잘못 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미치는 사업의 경제적 기회비용이라든가 파급효과를 감안 하시면 감히 그런 말씀을 못 합니다. 국민의 세금……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래서 이게 유출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왜 관리를 제대로 못 했느냐 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정희수 위원 아니, 유출된 것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정부기관에서 한다는 그것 자체도 잘못됐다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면 정부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게 악용될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생각

있는 분들은 많은 걱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솔직하게 '아, 이것 참,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점도 있겠네요. 이것 잘못됐다' 솔직하게 딱 이렇게 얘기하면 다 끝나는 문제를 자꾸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수공의 '한반도 대운하'나 '내륙운하 검토' 이렇게 했듯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노 대통령이 그때 참평 포럼에서 이야기했는데, 박근혜 대표 열차 페리 관련해서 또 한마디 했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련 선행자료 수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이러면 하실 것입니까, TF팀 만들어 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아까 이낙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떤지 제가 좀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다시 TF팀 해 갖고 하실 거냐 이거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별도 무슨 TF팀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 게 이 대운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건설교통부가 업무를 진행해 온 사업도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5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이지 않습니까?

○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이것은 별도의 TF를 만들어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만큼 필요한 것이지만 페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TF까지 만들어서 검토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정희수 위원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이것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다고 회신이 왔어요, 여기에.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글썽요, 시설공단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희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장관께서 그것을 저한테 서면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러니까 비가 사납게 몰아칠 때는 비를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현명한 처신입니다. 자꾸 이렇게 국력을 엉뚱한 데 낭비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느냐? 그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처신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법안 관련해서 항공법 1월에 하신 것 있지요, 그것 기억하시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협정 맺은 것 말씀……

○**정희수 위원** 예, 협정 맺은 것, 이것 문제 있다는 것 아시지요?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협정이 그 법률을 거꾸로 압박하는, 이해하시지요? 그러니까 행정협정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체결했으니까 위에 법 바뀌 달라, 정상적인 방법은, 절차는 법을 먼저 바꾸고 난 다음에 행정협정 체결해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시간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먼저 고치고 항공협정을 맺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실무자들은 행정협정을 먼저 체결하면서 또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법에 있는 것은 재량행위이지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공협정을, 행정협정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법과 정면으로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법률 자문을 받고 또 항공협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 때나 우리 마음대로 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또 이제 법에 들어가 버리면 협상이라고 하는 게 우월적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희수 위원** 장관님,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유능한 공무원들이 무엇 때문에 계십니까? 시간에 쫓겼다 그리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그런 법률자문을 했다는 그 사람도 참 이상한 사람이고 이 자체는 국회의 권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 입법기관이 엄연히 있는데 불구하고,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행정부가 위에 있습니까? 그 행정협정, 행정부 다 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 입법부 당신네들 말이지, 우리 이랬으니까 따라와라’ 말이 되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래서 정부가 체결하는 협정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운다든지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은 정부가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법에 위임을 받아서 체결하는 협정에 대해서는 행정협정이라 해서 국무회의 심의만 거쳐서 체결하는데 이 항공협정은 후자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법에 저촉되면 안 되지요. 저촉되면 안 되는데……

○**정희수 위원** 아니 그래도 저촉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위원들은 이 내용을 갖고, 워낙 점잖으신 분들이 속으로만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대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무리 급하더라도 절차가 있는 거고 평소 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야…… 법 원칙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켜야 되실 분이, 모범을 보여야 되실 분이 이것을 깨버리면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런데 항공법 150조에 보면 어떤 특정 국가하고 항공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그 나라의 기업의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취항을 했는데……

○**정희수 위원** 내용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러니까요.

○**정희수 위원** 내가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러는데 만약 그 나라의 지분이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한국 정부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취소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고 또 이것은 이미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의 주식이, 그 나라의 지분율이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체결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내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주승용** 정희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정희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해 주

시고……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이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대리 주승용** 보충질의를 이따 해 주세요.

○**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관께 아주 객관적으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승용** 다음에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 경기 안성 김선미입니다.

오전 내내 대운하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그것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요, 아주 객관적으로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물어볼 것도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번 제가 물어볼 테니까요,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37쪽 보고서를 변조·요약하여 국회에 제출한 재검토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데 사실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37쪽을 우리가 작성……

○**김선미 위원** 37쪽 보고서를 변조·요약하여서요 국회에 제출한 재검토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데 사실이나……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사실 아닙니다.

○**김선미 위원** 아니지요. 37쪽 보고서하고요 9쪽짜리 그 보고서의 내용과 글 자체가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벌써 언론에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같지 않나요, 다른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래서 이제 아마 같다, 다르다 하는 것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은 컨셉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르다고 얘기를 했던 것은 오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6월 18일 아침에……

○**김선미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다른니까, 같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선미 위원** 그다음에 18일 건교위에서 중간 보고서에 VIP라는 표현이 없다고 했는데 제출 자료에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 번 설명하셨어요, 그렇지요?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저는, 중간보고서에 VIP라는 용어가 없다는 말을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지만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김선미 위원** 없지요? 없으시다고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김선미 위원** 그러면 공식 문서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통상적으로 공식 문서에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 직원들이 제 밑에 40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VIP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것은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관행적으로 공식 문서에는 ‘대통령님’이라고 또는 ‘대통령’이라고 한글을 쓰는 게 맞지 그것을 VIP라고 쓰는 것은 약식보고를 한다든지 길게 쓰는 게 귀찮다든지 이럴 때 간단한 보고에서 쓰는……

(주승용 간사, 조일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선미 위원** 보고서에서는 그런 말, 용어를 쓰지 않지요? 그렇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통상적으로 공식 문서에는 안 씁니다.

○**김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건교부 9쪽짜리 보고서와 37쪽 보고서가 서로 상이, 사업비 등이 숫자가 좀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5월 7일에 저희에게 보고할 때, TF에서는 저희에게 보고된 숫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보고 끝나고 나서 최종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토론도 하고 논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가면서 조금씩 숫자가 달라지는데 37쪽에는 달라진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37쪽 보셨습니까, 장관님?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때 자료를 쥐 가지고 제가 받아서 어제, 그제 봤습니다.

○**김선미 위원** 그런데 숫자상으로 차이가 많이 발견됐?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총사업비……

○**김선미 위원** 그러면 그 숫자는 장관님 그때 보신 것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처음 봤지요.

○**김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96년부터 98년까지 타당성조사 결과만 재검토를 하셨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재검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재검토했다고 하면서 거기에는 이명박 전 시장 측 계획과도 비교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 왜 그러셨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적을 해 주셨길래 제가 우리 실무팀장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왜 중간보고서에, 그냥 여기 보고내용만 들어오면 됐지 MB라는 표현을 썼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한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하나는 2006년 12월에 신동아에서 이 전 시장 측 계획안하고 우리 98년 수자원공사 계획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 조사보고서에 왜곡·부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고 그 후에 다른 언론사에서도 2개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TF팀에서도 계속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선미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리고 또 하나는 실은 2005년 12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수자원공사에 89년 보고서를 좀 업데이트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켰던 배경이 시중에서 자꾸 대운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무팀장 얘기는 그렇다면 중간보고서라고 하는 게 그 두 가지 목적에 기여하려면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게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김선미 위원** 37쪽 보고서는 누가 작성했고 TF 자료는 어떻게 유출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것은 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수사에 의뢰해서, 그것은 수사건에서 밝혀야 될 사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선미 위원** TF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중간보고서가 작성 보고되었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9쪽짜리 중간보고서는 우리 팀장이 수자원공사, 건기원, 국토연구원 이

세 연구원의 전문가들 팀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된 내용을 정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까지 논의가 됐다 하는 것을 9쪽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해 준 거지요.

○**김선미 위원** 그 회의결과를 요약해서 보고한 것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논의된 내용을, 예. 4차까지 논의된 내용을……

○**김선미 위원** 아까 중간에 철도 페리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정희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그것도 철도시설공단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 수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장관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대권 후보자들이 하는 공약마다 전부 정부 차원에서 조사할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엄청난 의혹을 살 수가 있지요? 그거야 후보자들이 자기 자신들이야 거기에 대해서 그 공약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정부 차원에서는 그것은 하등의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렇습니다. 대운하도 우리가 무슨 공약이라고 해서 이것을 조사하고 검토한 것이 아니고……

○**김선미 위원** 의도가 아니다 이거지요.

장관님 답변 아까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의도 아니고 지금까지 과거에도 그게 제기가 됐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하셨다 그리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요약보고서를 9쪽짜리로 만들었다 지금 그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계속 이런 의혹을 가지고서, 사실 건교부 요즘에 굉장히 어렵지요? 이런 의혹 때문에 업무 차질 빛는 것 또 우리 상임위에서 오늘 하실, 올라온 법안 대체토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 자꾸 떠드는 것 자체도 내가 저번 질의할 때, 이것을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한편 좀 창피합니다.

죄송합니다. 1분만 넣어 주십시오.

진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7분이라는 이 아까운 시간을 그 쓰잘 데 없는 것 가지고 지금 다 허비해 보냈습니다. 하면서도 좀 기분 나쁘지만 하도 의혹을 많

이 사길래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어저께 공청회 했지요, 대한토지주택공사 통합 법안 관련된 것요. 그 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논의 많이 되어 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김선미 위원** 어저께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문제 많이 대두되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주공과 토공의 기능 조정방안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견해 가지고 계신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김선미 위원** 통합 찬성하십니까, 정부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지금 토공도 그렇고 주공도 그렇고 금년에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과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또 각자의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통합을 지금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선미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청원인데요, 서면으로 답해 주십시오. 경매 완료된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구제에 관한 청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부도난 공공임대주택의 통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경매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관련된 통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경매 완료된 공공임대주택의 통계가 있는지, 그리고 부도 임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 주택의 통계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주시고요. 현실적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그리고 각 법안에 대한 대체의 건은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일현** 법안 심사에 필요한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갖다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재성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오늘 대운하 문제 때문에 하루종

일 많이 시달리셨는데 저까지 또 질의를 하면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 보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사업으로, 국가정책으로 추진돼 왔던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혹은 국회에서 논란을 빚어 왔던 중요한 법률이나 정책 중에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대운하가 만약 이런 논란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우 긍정적인 프로젝트로 국민들이나 전문가들한테 받아들여졌다면 아마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에서 대운하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끊임 없이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아무 준비 안 하고 있으면 그것 야단맞는 것 아닙니까?

또 거꾸로 어느 후보가 갑자기 부동산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나 정치세력들이 격돌하게 됩니다. 건교부장관 견해에 대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준비 안 할 수 있습니까?

교육도 예를 들어서 대학까지 전체 무상교육하겠다, 어느 후보가 공약을 했습니다. 논란이 됐습니다. 교육부장관에 대해서 견해를 묻는다면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어느 특정 후보가 감세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당 부처에서는 이것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혹은 국민들이 요구할 때 그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혹은 그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야 될 때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논란이 되지 않고 또 국가 정책의 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크게 검토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옹당 부처에서는 이런 정치권 내지 국회, 혹은 차기 대권 후보의 공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권력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스터디가 안 된 겁니다.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했다는 것은 대통령 후보 개인의 일이 아니고 입법부 구성원들의 중요한 정치적 활동에 의해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고 안 결정되고, 혹은 그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농후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따라서 입법부는 입법부 따르고 행정수반은 행정수반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정당이라는 정치구조 속에서 후보가 탄생되고 그 후보가 행정부 수반으로 진출하는 겁니다. 따라서 후보의 공약은 후보끼리의 충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입법부나 행정부처에서도 과정상에서 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권력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부처에서 준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건교부장관께서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그게 중립입니까? 이것은 선거 중립과 기본적인 부처의 의무, 또 우리나라 권력구조의 특성, 대통령 선거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37페이지의 보고서 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나름대로 상임위에서 장관께서 신실하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9페이지 보고서 얘기를 꺼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논란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소신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국가 권력구조나 선거의 특수성을 심분 이해해서 가지고 부처에서 준비할 것은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장선 의원께서 발의하셔서 지금 계류 중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공원의 조성과 공원내 학교시설의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결국 이것은 학교를 단순히 학교로 국한시켰던 과거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공원하고도 연계해 주고 그러면서 개발이나 이런 데에서 효용성을 기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개발 주체에게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법률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법률의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편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제가 깊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거나 안 그러면 실무자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혹시 누가 대신 말씀해 주실 분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법안은 상정이 안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누가 얘기 드릴 수 있나요?

○**최재성 위원** 이게 상정이 안 돼 있나요?

○**건설교통부정책홍보관리실장 이재영** 제출만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이번 상임위에는 상정이 안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법리상 문제, 법 개정 문제하고는 별개로 예를 들어서 행정도시 같은 경우 공원에 학교를 설치하고 운동장 같은 경우에 주중에는 학생들이 쓰고 주말이나 야간에는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최재성 위원**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은 작은 개념일 수 있고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일반 공원하고 경계를 없애는 겁니다. 학교는 과거에 학교 부지·운동장까지 다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학교공원으로 설정하게 되면 공공용지 중에 공원의 몫으로 이것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부대적인 효과로 공원하고 소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운동장 자체를 공원으로 꾸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취지를 가진 법안인데 이것은 나중에 또 한번 제가 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학교가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기존의 공공시설 개념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제가 강남대 도시건축공학부 김종석 교수 논문이나 기타 자료들을 보면 유사공공시설하고 학교를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요 학교가 공공성이 가장 커요.

그것은 이용선택권부터 도로접근권 등 몇 가지 지표를 설정해서 분석한 것인데 그것을 건교부에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가지고 학교를 만약 공공시설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부처의 업무들이 각각 따로 돌아서는 안 되거든요. 미래지향적인 업무라면 우리가 협조를 하고 총체적인 안목을 갖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좀 정리해서 주시고 그에 따른 견해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일현** 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주승용 위원입니다.

장관님, 현실성도 없는 한반도 운하 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시끌시끌한데요. 만약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했을 때 한반도 운하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개발 조금만 하게 되면…… 경인운하도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못 한다고 수십 년을 저러고 있는데 과연 온 국토를 운하를 만드는데 이게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나는 이것을 검토 대상 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건교부에서 한 것 자체부터가 잘못이라고 보고 건교부·수자원공사·국토연구원 TF팀 만들 필요도 없고, 사실 이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소모전을 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데요.

지금 열 곳에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주·전남이 공동혁신도시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주·전남 같은 경우는 두 곳에 혁신도시 조성할 것을 지금 한 곳에 조성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반시설지원금을 지원할 때 최소한 2배 정도는 지원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더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2배 이상 더 줄 겁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아닙니다, 이게 2배다 얼마다 그렇게 딱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주승용 위원** 그러니까 1개의 혁신도시에 건설되는 지원금보다는 더 해 준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1개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드리려고……

○**주승용 위원** 그래도 광주·전남으로 봐서는 손해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런데 혁신도시가 지원받는 것만 갖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주승용 위원** 이것은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지원금이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주승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지원돼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추가 지원하는 것이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주승용 위원** 지금 호남고속철도 기본설계 하고 있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주승용 위원** 기본설계 몇 년 걸립니까? 2년 걸리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23% 정도 됐다고 같습니다.

○**주승용 위원** 이게 2년 걸리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주승용 위원** 그것 끝나면 실시설계 할 거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주승용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또 1년 걸리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주승용 위원** 그러면 설계하는 데 3년 걸리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말씀하시지요.

○**주승용 위원** 금년부터 시작했으면 내년까지 기본설계 하고 2009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제가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기본설계를 2년 할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따라서는 기본설계 1년 하고 난 후에도 실시설계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한 1년 정도를 앞당겨 단축할 수 있다, 이게 전문가의 의견이거든요.

또 지금 우리나라의 각종 전라선이나 중앙선이나 동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매번 상임위 때마다 주장하는데 지금 건교부의 입장은 꼭 기본설계 끝나고 나면 그 후에 실시설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 좀 말해 보십시오. 이것 동시설계 안 되겠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15년, 그리고 2017년까지는 차질 없이……

○**주승용 위원** 안 돼요, 안 돼.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나……

○**주승용 위원** 설계 2009년도에 끝나 가지고 2010년도부터 하면 5년 6년 만에 안 돼요. 그래서 1년이라도 설계를 앞당겨 보자는 것이 저의 취지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여하튼 광주까지는 끝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 재원 문제를 확실하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동시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미리 주장하는 겁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다음에는 오늘 상정하는 것조차 논란이 많았던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이해를 돕고자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축은 수도권과 경부 축에서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섭게 쫓아오는 중국과의 격차가 좁혀지는 상황에서 제조업 중심의 경부 축 외에 새로운 산업을 담당해야 될 지역을 확보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새로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지정학적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서남해안과 지척에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황해경제권역이 EU·NAFTA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개방 후에 연 9.7%의 고성장을 유지하며 경이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남해안에서 2시간 비행거리에 인구 500만 명 이상인 도시가 18개나 되고 3억 명이 넘는 시장인구가 있어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지리적인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서남권의 잠재력을 전략적으로 잘 결합해서 정책적 지원을 제대로 하면 국제적 경제거점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남권이 갖추고 있는 지리적 장점을 잘 활용하면서 잘 보전된 청정해역을 훼손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적인 복합 관광레저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기지를 조성한다는 기본전략을 정부에서 수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남권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국가전략을 어떻게 개발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이렇게 추진하

자는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즉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발의 이유를 감안하신다면 특정 지역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새로운 성장동력의 개발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2조 원에 달하는 예상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사업비 22조 중에서 15조 2000억 원은 인프라 사업비인데 무안국제공항, 호남고속철도, 무안-광주 고속도로, 목포대교 등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중장기 인프라 사업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조 2000억 중에서 6조 6300억 원은 민자로 유치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5700억 원 정도만 재정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것도 민자 유치를 위한 유인책으로서 초기 기반 조성 단계에서만 투자할 예정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과중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의 서남해안특별법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서남해안특별법은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지만 총리실이 주관인 데서 정부에서 사실상 추진하고 있는 법률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그 법이 하루 빨리 통과돼서 낙후지역들이 균형 발전 차원에서 빨리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승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일현** 다음은 문학진 위원님 토론하시고, 우리 주 간사 하시겠습니다.

먼저 문학진 위원께서 토론하십시오.

○**문학진 위원** 문학진입니다.

건축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의 적용 특례, 이 조항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2004년도에 저희 지역구인 경기 하남에서 발생한 일을 예로 들겠습니다.

2004년 11월 1일 하남시청 녹지관리팀에서 작

성한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 1일 보고에 따르면 기존의 건축물을 무단철거한 후 허가절차를 미이행,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다음에 바로 그다음날인 11월 2일 포크레인을 투입해 가지고 대집행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날 대집행이 실시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현장은 공사 중지 상태여서 사람이 없었고 그다음에 위법을 한 당사자인 집주인이 외출 중이어서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어떤 다른 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하남시청에서는 ‘불법 건축물을 대집행하러 나왔다.’ 이렇게 핸드폰 연락만 하고 당사자가 없는 채로 그냥 집행을 했던 말이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남시청에서, 건교부가 그건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남시가 회신한 내용을 보면 ‘순찰 중이던 청원경찰이 적발해 가지고 위반 행위자한테 전화 통화한 다음 내부보고를 통해 대집행을 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대집행 직전에 통보만 핸드폰 연락으로 받았지 사전에 계고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에서 2005년 6월 하남시에 이와 같은 계고 없는 대집행, 이것은 적법하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에서는 고충처리위의 결정이 어떤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계고 없는 대집행은 적법한 행위다, 그래서 차후로도 건축법 제74조에 의거해서 이와 같은 계고 없는 대집행을 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어요.

건축법 제74조를 보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뭔지 이게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허가자의 재량권 남용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히 우려된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동 규정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살펴보니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기 때문에 계고 처분이나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는 그런 비상시 이럴 때라든가 또는 다른 방법

으로는 그 이행 확보가 어렵고 그 불이행을 방지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런 것 등이라고 보는데 제가 지금 예를 든 하남시의 경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중지 상태였고 또 위법 행위자가 실제로 거주는 하고 있으나 외출 중인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공사 중지 명령이나 계고처분 없이 바로 대집행된 것은 아무리 불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허가자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행규칙이나 별도의 어떤 기준을 뒤서 이런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저도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판례나 예규 해석 그리고 간행 등의 공통사항을 모아 가지고 세분화해 놓는 것이 재량성도 막을 수 있고 예측성도 높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너무 단정적으로 한정시켜 놓으면 행정의 탄력성이 없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조화시키는 차원에서 법령상에서 규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학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계고 없는 대집행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일현** 문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윤두환 간사께서 질의하십시오.

**○윤두환 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조일현**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윤두환 위원** 오늘 아침부터 지금 벌써 5시입니다. 장장 한 7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제가 또 마지막이니까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여기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토론장입니다. 그렇지요? 여기는 임명직인 주무장관을 배석시켜서 현안이든 법안이든 청원이든 무엇이든지 위원들은 다 질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관은 장관의 입맛대로 이 말은 하고 이 말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권한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현안보고 과정에서 지금 우

리가 명백하게 하려고, 그리고 지금까지 공직생활 그렇게 해 왔고 한 점 의혹 없다, 그래서 경찰 수사까지 의뢰했으니깐 여기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마라, 이런 쪽의…… 국회의원들한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장관이 얼마나 오만불손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얼마나 장관이 도대체 국민을 알기를 어떻게 봤으면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도 여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마지막으로서 다른 부분보다도 장관의 그 태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제 나름대로는 위원님들께 공손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불손하게 보였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두환 위원** 장관께서 사과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알겠습니다.

○**윤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일현** 질의 더 안 하세요?

○**강창일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일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 시간이 윤두환 간사 말씀따라나 상당히 지났거든요.

보충질의 하실 분이……

○**김선미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일현** 가만히 있어 봐요.

두 분 하시겠어요?

의사진행발언 있고요.

답변하시는 정부 측에 묻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우리가 5분씩이 있고, 의사진행 한 분이 계시는데 그냥 진행을 해도 괜찮겠어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예,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조일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진행발언 원지 받고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장관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저쪽 보고 얘기해요. 질의가 아니에요. 의사진행발언이예요.

○**김선미 위원** 죄송합니다. 나는 시키신 줄 알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일현** 그러면 질의예요? 의사진행발

언이 아니고 보충질의?

○**김선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조일현** 의사진행발언은……

(웃음)

○**김선미 위원** 먼저 주신 것 아닌가요?

○**위원장 조일현** 먼저 한 것이예요. 먼저 한 건데,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 보고 하는 거라고 아까 우리가 토론했어요.

○**김선미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이것은 글썽 의사진행발언이 될 수 있고요……

○**위원장 조일현** 질문이지요?

○**김선미 위원** 질문이지요.

○**위원장 조일현** 그러면 질의라고 하셨으니까 제일 먼저 아침에 질의를 하신 김재경 위원이 먼저 보충질의 하시고 강창일 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김선미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김재경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시되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김재경 위원** 수자원공사 고양수 팀장 다시 좀 물어봅시다.

○**위원장 조일현** 왜 거기 대기하라고 그러면 계속해서 있으시지 그렇게……

거기 자리가 없어요?

○**참고인 고양수** 수자원공사 고양수입니다.

○**김재경 위원** 아까 우리가 파일 3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앞의 것,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만들어서 수공에 주었다는 그 파일은 6월 18일 엇그제 보고 전에 받은 거지요?

○**참고인 고양수** 잘 못 들었습니다.

○**김재경 위원** 엇그제 6월 18일 보고 전에 건교부에서 9페이지짜리 보고서 만든 것 그것 수자원공사에서 줘서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참고인 고양수** 37쪽짜리는 화요일 날 받았습시다.

○**김재경 위원** 파일 3개 다요?

○**참고인 고양수** 아니고요. 언론에 유출된 37쪽 짜리……

○**김재경 위원** 그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파일 3개 이야기하는 것이라니까요, 컴퓨터 파일.

○**참고인 고양수** 파일은 전혀 안 받았습시다.

○**김재경 위원** 하나도 안 받았어요?

○**참고인 고양수** 예.

○**김재경 위원** 건교부에서 왜 보고서 만들고 수공에 하나 보내준 것 그것 업데이트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 있었다 아닙니까?

○참고인 고양수 이것은 장관님 보고자료……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래 그것 언제 받았냐고요.  
18일 전에 받은 거지요?

○참고인 고양수 18일 전이 아니고 6월 7일 이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6월 7일 이후로 받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왜……

○참고인 고양수 6월 7일이 아니라 5월 7일입니다.

○김재경 위원 그 뒤에 또 수공에서 만들어 가지고 건교부로 준 파일이 하나 있지요, 그렇지요?

○참고인 고양수 건교부로요?

○김재경 위원 예, 수공에서 만들어 준 게 하나 있잖아요. 37페이지 일부 14쪽짜리.

○참고인 고양수 건교부에 준 것은 아니고요. 5월 10일 날 TF 5차 회의 때 회의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김재경 위원 아니, 수공에서 만들어 가지고 건교부에 준 게 하나 있잖아……

○참고인 고양수 그 자료는……

○김재경 위원 5월 7일 보고용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여러 가지 수치 대비해 놓은 것.

○참고인 고양수 5월 7일 장관님 보고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경 위원 보고자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자료 하나 준 게 있었잖아, 파일 하나.

○참고인 고양수 그것은 제가 워드를 치는 실무직원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몇 회 정도는 해서 서로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김재경 위원 그래 그것을 세세하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 2개—37쪽 보고서의 주축을 이루는 파일 2개—를 수공과 건교부가 공히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참고인 고양수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14페이지 부분은 장관님 보고자료를 토대로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김재경 위원 받아서 업데이트를 진행 중이고……

○참고인 고양수 예, 장관님 자료……

○김재경 위원 그 뒷부분 14페이지짜리 그것은?

○참고인 고양수 14페이지짜리는 저희들이 작성

을 하였습니다. 수공에서……

○김재경 위원 작성해서 건교부에 줘서 그것을 토대로 9페이지짜리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지요?

○참고인 고양수 거기에는 그렇게 동의를 못 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김재경 위원 하여튼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니요?

○참고인 고양수 아닙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닙니다.

○김재경 위원 대부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참고인 고양수 아닙니다.

○김재경 위원 아니라? 그러면 들고 가서 주는 수밖에 없겠네.

국회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서면을 가지고 이렇게……

(발언대로 이동)

이것, 이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참고인 고양수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래 가지고 제일 앞의 이것 여기까지는 아까 이야기된 것이고 이 뒤의 부분은 수공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쪽으로 준 것 아니냐는 얘지요, 14페이지. 그렇지요?

○참고인 고양수 이 부분은 건교부에 준 자료가 아니고요 이 앞부분 14페이지 부분의 하나의 산출 근거입니다, 이게.

○김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파일은……

○참고인 고양수 그런데 왜 이 파일만 줍니까? 만약에 준다면 이 전체를 다 드려야지요.

○김재경 위원 그런 엉뚱한 소리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수공이.

○참고인 고양수 예, 수공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수공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건교부에 주었지 않느냐 말이지, 내 말은.

○참고인 고양수 이 파일만은 건교부를 주지 않았습니다.

○김재경 위원 이것을 안 줬으면 그러면 앞의 내용 이것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게 건교부에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게 이것 아니요?

○참고인 고양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재경 위원 이거요. 이게 이것 없이 만들어 지냐 이 말이지.



○참고인 고양수 예, 산출 근거가 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갔으니까 이것 만든 것인데 왜 안 줬다 그러나 이 말이지.

○참고인 고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전혀 워드를 안 썼습니다. 그래서 실무직원들은 언제든지 수시로 공유를 할 수 있…… 자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재경 위원 좋습니다.

그래 여기 이 37쪽짜리 보고서 중에서 15페이지부터 29페이지 이 부분이 없이는 그 앞에 있는 건교부가 만들었다고 하는 이 9쪽짜리 보고서의 ‘3. 주요쟁점 검토’ 이게 만들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지요, 그렇지요?

○참고인 고양수 예, 근거자료가 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렇지만 위원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의 9쪽을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 직원들이 그 산출 근거까지 다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서 만든 게 아니고 TF에서 회의하면서 0.16이다 뭐다 하는 숫자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뒤쪽 14쪽을 건교부에 9쪽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하는 것은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김재경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건교부가 9쪽을 작성했기 때문에 작성하려면 이 14쪽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준 것 아니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건교부 실무자들이 작성한 것은 TF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숫자 나온 것을 그대로 넣은 것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재경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수공에서 만약 이 뒤에 붙은 14페이지 짜리 자료를 안 받고 건교부가 ‘3. 주요쟁점 토론’ 이것 만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것은 저도 모르니까 실무자들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재경 위원 예, 그러면 이야기해 보시지요.

○참고인 안정훈 아까 그 산출근거 같은 것은 회의 때 그런 자료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료를……

○김재경 위원 제시는 되었는데 파일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솔직히 이야기해 봐요.

○참고인 안정훈 그 37쪽에 있는 것에 대한 파일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을……

○김재경 위원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파일, 9페이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37쪽짜리 보고서가.

○참고인 안정훈 예.

○김재경 위원 14페이지, 14페이지, 기본적으로 그 파일은 건교부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내말은.

○참고인 안정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재경 위원 3개 다 있을 수도 있지?

○참고인 안정훈 없을 것 같은데, 확인은 컴퓨터를 잘 봐야 되는데 제 컴퓨터가 압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됐습니다, 두 분 들어가세요.

확인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장관님이 본인의 진퇴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전체는 다 장관님의 말씀을 전체로 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전체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문제가 되는 보고서가 밖으로 유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건교부 사상 그 유레가 없이 수사 의뢰를 해 가지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또 오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검에도 수사 의뢰를 이 건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런 파장에 대해서 장관님은 물론 밑의 사람들이 업무 처리를 잘못된 것을 내가 어찌 4000여명의 직원을 일일이 다 관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러한 관리와 기강이 흐트러진 것은 장관이 책임 안 지면 또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또 그간에 장관님이 아까도 “혁신 변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별로 변화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이 18일 날 이 보고서를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즉시 제출이 되었다면 그를 둘러싼 파장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하니, 그것도 즉시 내지를 앓고 몇 시간을 끌다가 저녁 늦게 주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장관의 처신이 올바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18일 날 장관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장관의 전체적인 말의 취지는 “이 보고서는 누군가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조작한 것 같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일 안 한다. 공무원이 마치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강도 높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전모가 드러나서 보니까 이 보고서와 유사한 보고서가 결국은 건교부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보고서도 앞쪽에 보면 무슨 주요 정치동향까지 포함되는, 이것은 사찰기구에 서나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행정을 하는 기관에서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장관이 그날 누누이 이야기를 했듯이 장관 스스로, 그 기관 내에서 만들어진 보고서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그것을 장관이 장관의 눈으로 또 확인까지 하고 청와대에 보고가 되었고 그래서 중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이 비난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건교부가 이 사건을 둘러싸고, 우리가 보건대 전혀 영이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잠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날 장관은 “이게 본 적도 없는 서류입니다”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보셨잖아요. 수공 직원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실무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뒷자리에 배석을 해서 있으면 “장관님,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유사한 것을 우리가 만들기는 했지만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무슨 날조된 서류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 조직 내에서 그것을 시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장관이라고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장관입니까?

이미 장관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위원장 조일현 정리를 해 주시지요.

○김재경 위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 사태가 불러 올 파장, 그리고 이것의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규명하기 위해서도 장관이 자신의 진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실무자들을 상대로 확인하고 싶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일현 다음에 강창일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참 안타깝군요. 오늘 계속 경부운하 문서 건을 가지고……

가만히 봤더니 수사기법에 그게 있어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문서가 새 나왔고, 이것을 어떤 사람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언론에 공개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이것 아니에요, 현상은?

전후를 들어 가지고 대국민적 관심사인 경부대운하 이것을 이제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연구 검토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수사기법의 첫 번째는 말이지요 ‘누가 제일 덕 볼까?’ 이것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유추하지 않습니까? 저는 경찰관 출신 아닙니까는 옛날 괴도 루팡 같은 것에 보면 그런 것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남의 집 싸움인데 참 이런 것은 건교부 좋은 일을 하다가 끌려가 가지고 지금 온통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이거야.

지금 누가 제일 득 봤을까?

최재성 위원, 혹시 누가 제일 득 보셨습니까? 한번 여쭙 봅시다.

○최재성 위원 제가 후임 간사거든요. 장관한테 여러 가지 물어 볼 게……

○강창일 위원 가만히 봤더니 이건 남의 집 싸움이야. 어떤 두 사람이 지금 싸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이 제일 득을 보는 거지. 참여정부 덕 볼 게 뭐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 종일 이 문제가, 또 이 국회에까지도 전부 그런 문제에 온통 되어 놓으니까 내가 참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문제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토공사장께서 계속 제 앞에 앉아 계셔서 제가 이 보충질의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김선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어저께 토공·주

공 통합하자는 법안이 제출됐어요. 공청회를 했는데 건교부에서도 좀 지금 왜……

이런 게 명분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말이지요 현실성, 효율성, 시너지 효과 등등을 생각하면 당연히 합치는 게 적당하지 않거든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학에서 토목과하고 건축과 합치자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 업무가 분명히 취지와 목적이 틀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명분을 얻고 있어.

명분을 얻고 있는 것은 뭘지 압니까? 제가 볼 때는 토공과 주공의 영역과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데서 오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는 거예요. 토공 주공이 구분이 안 돼.

이것은 건교부가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계속 정치논리에 의해서 30만 평 토공도 할 수 있도록…… 주공이 할 수 있도록 했는가?

또 토공도 주택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계가 불분명하고 영역이 불분명하니까 합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아주 틀린 두 기관을 합치자는 것이 국민적 설득력을 갖게 되는 이상한 꼴로 왔다 이겁니다.

합치는 것 찬성합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 토공하고 주공하고 할 일이 따로 많이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래 토목과하고 건축과하고 비슷한 거지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러면 아까 토공은 국토개발…… 아니 도시정책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고 주공은 주거 복지적 차원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 예.

○강창일 위원 그런데 이것 합치자는 이상한 논리가 지금 유행하고 있어서 하도 답답해서 그래요.

주공사장 여기 와 계세요?

○대한주택공사사장 박세흠 예.

○강창일 위원 좀 잠깐 얘기해 주세요.

○대한주택공사사장 박세흠 주택공사 사장입니다.

○강창일 위원 통합하는 것 원합니까?

○대한주택공사사장 박세흠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아니, 불가능한 것하고……

합치는 것을 원하시냐고요, 심정적으로.

○대한주택공사사장 박세흠 합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강창일 위원 원하지 않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박세흠 예.

○강창일 위원 그러면 이제는 해결방법이 뭐예요?

자, 원하지 않고, 합쳐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은 현실성이예요. 현실적으로……

다음에,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 원하지 않을까?

○대한주택공사사장 박세흠 각자의 일이 있기 때문에……

○강창일 위원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박세흠 예.

○강창일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경계 분명히 하는 게 좋지요?

영역을 분명히, 본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주공과 토공이 존재해야지요?

그러면 되겠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박세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토공, 주공 합치는 그런 이상한 논리가 명분을 획득하지 못하지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대한주택공사사장 박세흠 예,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장관님은 정신이 없을 테니까, 이춘희 차관님!

이제는 건교부가 나서서 경계를 명확히 해 버려요. 헛갈리게 하지 말고, 국민들.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알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것 잘못 지도해서 그렇잖아요. 본래대로,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끔 명확하게 영역과 경계를 나눠 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못해 놓으니까 지금 이상한 논리들이 유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각각 설립 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법에 따라서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창일 위원 그 기능을 지침에……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아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강창일 위원** 30만 평 그것도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그것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창일 위원** 않지요. 그러니까 이상한 정치논리 가지고 30만 평까지도 할 수 있도록 자꾸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법이 아니고, 법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임의적 훈령이라든지 지침 이런 것을 가지고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명확히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일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김선미 위원** 김선미 위원입니다.

정말 장관님 정신이 없으신가 봐요. 어떡하지요?

아까 최재성 위원이 질의하신 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법이 올라와 있거든요. 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아닌데요.

○**김선미 위원** 아시지요? 이제 파악하셨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아닙니다. 무슨, 어디에 올라와 있지요?

○**김선미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지요. 이게 이번에 오늘 우리 일정에 들어와 있는 법 중에……

○**최재성 위원** 정장선 의원 법을 제가 여쭙어봐 가지고……

○**김선미 위원** 그것은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입니다. 최재성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

○**최재성 위원** 내 것은 올라와 있고.

○**김선미 위원** 예, 올라와 있는데……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 법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김선미 위원** 아까 그런데 왜……

공원 이용에 관련된 그 내용 아닙니까? 비슷한 내용인데.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아닙니다. 다른 법입니다.

○**김선미 위원** 예, 그다음에요.

아까 토공과 주공의 역할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기업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공기업은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공공성과 기업성입니다. 그래서 기업성만 강조한다면 공기업으로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목적을 기여하면서 또 효율성이나 기업성도 같이 고려되어야 되겠지요.

○**김선미 위원**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딱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어떤 영역에 있어서 대국민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 결국은 공기업의 역할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렇습니다.

○**김선미 위원** 그런데 보면 양 공사가 분명 확실하게 역할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근거법에 의해서 기능이 있지요?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 규정에 의해서 양 공사가 존립을 하는 거고요. 이것을 통합할 경우에는 통합에 따른 영향 분산은 물론 어떻게 보면 두 공사의 양쪽 집단이 대립과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행정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보면 목적의 명확성과 국토정책 체계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양 공사에 대한 기능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까 강창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같은 여러 가지 이런 것에 의해서 양 공사를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있지만, 중복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통합을 아예 그러면 해 버려라. 왜 굳이 이렇게 분리시켰느냐?”라는 안들이 다시 자꾸 재논의가 되고 그러므로써 이 두 공사의, 어떻게 보면 이 두 공사가 애매하게……

아마 여기 주공 사장님, 토공 사장님 다 나오셨지만 요즘 업무하시기 어려우시지요, 이 법 때문에?

아마 직원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것은 업무상으로요.

그 두 공사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공성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분명 문제성이 있습니다.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있으

니까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이런 법들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관님이 아까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어떤 입장이라는 것은. 입장 바뀌셨으니까 이런 것이 다시 재논의 되지 않도록, 아니면 현실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하시고,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건교부가 이 양쪽 공사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강하게 써서. 어중간하게 행동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행동하십시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시행령, 시행규칙, 제가 그랬잖아요, 근거법 분명히 있어요, 양 공사법. 차관님이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것에 근거하세요. 어중간한 중간 시행규칙 시행령 자꾸 이렇게 변화시켜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나오신 말씀을 들어보면 양 기관에 독자적 영역이 있는데 어떤 어찌 생각하면 약간 회색에 어리어(gray area)가 있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 기관을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을 말끔히 해라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김선미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런데 이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 자르듯이 딱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공사는 무슨 택지 개발이다 산업단지 개발이다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주택공사는 주택 건설이나 주거복지를 하지만 주거복지 업무를 하다 보면 또 소규모의 택지 개발도 같이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적의 명확성 그다음에 정책 체계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한에서는 그런 복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로 상호 협조하는 부분도 있지요.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고 어떤 유연성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의 입장이 명확하다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이고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잘 알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제가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해석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됩니다. 특히 대운하 관련된 이런 14쪽, 39쪽, 37쪽 갑자기 왜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장관님은 9쪽 짜리 보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39쪽에 대해서는 보신 적이 없고, 하지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못 봤으니까 그것을 모르신다는 것이고 그렇지요? 하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39쪽이 만들어졌다고 표현하게 되면 마치 그것이 그리 간 것처럼 충분히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창 위원** 법안이에요?

○**위원장 조일현** 예, 법안입니다.

그러면 이재창 위원님이 법안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이재창 위원** 오늘 장관 하루 종일 이 운하 관계 때문에 머리가 전부 그쪽으로 쏠리셨을 텐데 법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중에서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특히나 지가 급등 우려가 적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일괄 지정되어 있는 것을 좀 풀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법을 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완화를 하도록 하고 근래에 부산 대구 대전 완화를 한다 이렇게 건설교통부에서 발표를 하신 것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투기과열지구 아니었습니까? 투기과열지구는 6월 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그렇게 그런 경우에 지금 법안 취지는 그런 취지인데 앞으로 건설교통부 정책으로 그것을 다룰 용의가 없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여기 이경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모두 제외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접경지역 중에서도 포천이나 이런 택지 개발을 하는 데는 그 영향으로 전국의 지가상승률보다 더 많이 오른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창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래서 전체를 제외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창 위원**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가 이것을 행정구역 단위로 하지 말고 지역별로 조사를 해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지역은 부분적으로 좀 허가구역에서 완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그랬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도.

○**이재창 위원** 그러면 이번 이 법안에 대해서 사실상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법안에 먼저 그것하고 맞추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완화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접경지역의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이고요. 다만 이것을 법령화할 때 구체적인 원칙만 정하고 시행령이나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입법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위 하시면서 논의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창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장관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안 심의 때 물론 논의되겠지만 건설교통부의 기본방향을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구역 단위로 이것을 하지 않고 지역별로 조사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시군의 경우라도 어느 지역은 규제를 완화하고 어느 지역은 좀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현재도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창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물론 이제 그 도시 전체가 비교적 이동성이 강하고……

○**이재창 위원** 지금 행정구역 단위로 이것을 지정하거든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행정구역 단위로 하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로 하고 있지만 일부는 또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사항이라기보다는 운영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재창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투기과열지구는 이번 6월에 저희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릴 텐데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다 그러면 전체를 넣느냐 빼느냐가 아니고……

○**이재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도권에 경우에 그냥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이렇게 해 가지고 수도권 하다 보니까 거의 일괄적으로 또 어느 지역에 시군 단위로 하는데 사실 부산이나 대구 대전에 비해서 어느 모로 보나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도 사실상 별로 없는 지역인데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접경지역을 다 거래가 좀 있었다고 해 가지고 전부 묶어 놓는 이런 것은 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을 비롯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가 되었고 또 정부에서도 이 법안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정부에서 안중에 토지보상을 현금으로 하지 않고 대토 보상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법안에서는 사실상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전부 법으로 규정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안은 오히려 대강 원칙을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오히려 좀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대토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에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저는 좋습니다.

○**이재창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아마 법안을 만드는 사람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재창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심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 안은 공장과 같이 특정화가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는 이전해야 될 지역의 사업지구로 포함해서 고시하면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전 못 하는 문제가 사전에 검토되어 가지고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토지보상법 상의 사업이라는 범위에는 단순히 주택을

짓는다, 공장을 짓는다, 사격장을 만든다 그것 이외에 이주, 토지매수사업 그 자체에 사업 내역이 있거든요. 하나의 프로세스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인정을 한다면 부대사업, 토지 보상법에 부대사업으로 용지 매수라는 사업을 인정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이주사업을 거기에 포함시키면 어떤 특정 법률에 의한 사업만이 아니라 각 공공사업의 일반 원칙으로 그것이 결정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전의 생활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진보적인 생각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공공사업 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용지 확보 아닙니까? 수용 또는 협의 매수를 할 때 이런 애로 때문에 사업이 공기 내에 착수도 못 하고 이리므로 해서 사실상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하고 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늘어나는 현상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실무진하고 여러 가지로 교수들하고도 토론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결론을 토론회에서 냈는데 장관께서 지금 즉석에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토지 보상법을 전향적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공공사업이 원활히 되게 하는 하나의 법으로 이렇게 이번에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지금 주신 말씀은 좀 깊게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그래서 이번 심의 때 한번 오늘 회의 마치고라도 이 문제를 실무진에게 검토를 해서 법안심사소위 때 한번 건설교통부의 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일현**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현안보고와 질의 그리고 법안과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또 이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일부 위원들께서는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내일 우리가 법안 심사소위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일 내에,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는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내용과 정부 측 답변은 함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과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리고 의혹이 의심과 불신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운하와 관련해서 그것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서 집행 과정에서의 조작과 진의 여부에 대한 지리한 토론 아닌 공방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것이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이 순간 국민적 관심사라는 아주 큰 불로 번졌습니다. 물론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문제를 경찰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밝혀 달라고 의뢰했지만 위원장이 볼 때 경찰은 경찰대로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볼 때 건설교통부 내에서의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도 건설교통부 자체 내에서 막연히 조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의를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와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보고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종료를 스스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아까 김재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유야 어떻든 법적 책임의 여하를 떠나서 정치적 도리는 우리 정부 측이나 우리 위원회에 있다는 것을 함께 공감하고 앞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 직원과 그리고 각 기관의 책임자는 특별한 유의가 있기를 촉구하고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해서 법률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윤두환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 위원(23인)**

장길부 장창일 김선미 김재경

문 학 진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이 낙 연	이 영 순	이 인 기	이 시 종
이 재 창	이 진 구	정 장 선	정 진 석
정 희 수	조 일 현	주 승 용	최 재 성
한 병 도	허 천	홍 재 형	

○출장 위원(1인)

김 석 준

○청가 위원(1인)

박 승 환

○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김 영 춘    황 우 여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유	병	곤
전 문 위 원	이	울	복
입 법 심 의 관	박	명	수

○정부측 참석자

건설교통부

장	관	이	용	섭
차	관	이	춘	희
시 설 서 기 관		안	정	훈
정책홍보관리실장		이	재	영
주거복지본부		박	상	우
토지기획관				
물류혁신본부		정	일	영
항공기획관				

한국수자원공사

사	장	곽	결	호
조 사 기 획 팀 장		고	양	수
대 한 주 택 공 사 장		박	세	흠
한 국 토 지 공 사 장		김	재	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이	성	권

○출석 참고인

고양수(한국수자원공사 조사기획팀장)  
 김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중원(국토연구원 국토환경문화연구실 연구위원)  
 안정훈(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팀 시설서기관)